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93-01

2010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2010년 12월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 조사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0. 12.

연구수행기관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표창원(경찰대학)
연구원	이동희(경찰대학)
	김영식(경찰대학)
	김석범(경찰대학)
	박미랑(형사정책연구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12
1.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12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5
제3절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18
제2장 현행 경찰의 주취자 보호 체계 및 문제점	19
제1절 우리나라 주취자 실태	19
제2절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22
제3절 현행 주취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	28
제3장 설문조사 결과	31
제 1절 방법론	31

1. 진행과정	31
2. 설문내용	31
3. 설문에 사용된 구체적 변수	32
4. 설문기간	33
5. 분석 방법	34
제 2절 조사결과	35
1.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35
2. 주취 경험자들의 위험요소 및 경찰과의 충돌 경험	39
3. 음주 소란자와 음주에 대한 인식	47
4. 음주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에 대한 인식	52
제 3절 경찰의 업무 환경 및 음주소란문제	57
1. 인권교육 관련	57
2. 음주 소란자 경험 및 이에 대한 인식	58
제 4절 요약 및 결론	64
제4장 현장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67
제1절 현장 참여관찰	67
1. 개요	67
2. 대상 경찰관서 참여관찰 내용	68

제2절 경찰관 심층인터뷰	76
1. 개요	76
2. 면담 주요 내용	78
제3절. 일반인 심층인터뷰	82
1. 개요	82
2. 면담 주요 내용	83
제4절 소결	86
제5장 주취자 보호관련 국제적 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88
제1절 주취자 보호 관련 국제법규	88
제2절 영국의 주취자 관리 시스템	90
1.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91
2. ‘단순주취자’ 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사례	93
3. 주취자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	95
제3절 일본의 주취자 관련 입법례와 운영사례	96
1.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97
2.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법규	103
3. 일본 경찰의 주취자 보호 실무 처리절차	105
4. 주취자보호 관련 통계	108

제4절 프랑스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114
1. 프랑스 주취자관련 입법례	114
2. 프랑스 경찰의 주취자 보호 절차	118
3. 프랑스 주취자보호실(Cellule de dégrisement) 운영 실태	120
제5절 기타 국가(미국, 호주, 독일)의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123
1. 미국의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123
2. 호주의 주취자 보호 체계: 「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	125
3. 독일의 주취자 보호 체계: 「통일경찰법모범초안」	126
제6절 외국 입법례 및 운영사례의 시사점	127
제6장 결 론	129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삼육대학교 알코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알코올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문화적 수용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 연구’에 따르면 WHO의 알코올 사용장애 식별척도 AUDIT로 우리나라 전국 성인 남녀 569명의 음주행태를 분석한 결과 46.2%(남성 61.9%, 여성 30.4%)가 ‘문제음주자’¹⁾로 나타났다.²⁾ 이런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현재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접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음주와 주취행위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술에 대한 관대함은 사회생활에서 술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과 술 먹은 사람의 행동은 한 번쯤 용서해 주어야 할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오늘날 음주가무를 부추기는 대중매체, 극도로 팽창한 유흥 향락산업의 영향 등으로 우리 사회는 인내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주취자 문제를 안게 되었다.

1) 알코올사용장애는 Babor 등(1989)이 개발하여 WHO가 공인한 알코올사용장애식별척도(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에서 12점 이상자를 알코올사용장애자로 분류한다. 삼육대학교 알코올문제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와 한국인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12점을 기준으로 알코올사용장애자 즉 ‘문제음주자’로 정의하고 있다;삼육대학교알코올문제연구소, 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문화적수용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 연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 30-31면.

2) 세계일보 2010년 02월 13일자 1면

주취자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주취자로 인한 무전취식, 음주소란, 기물파손 등 가벼운 범법 혹은 무질서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다. 둘째, 주취자 개인의 안전 문제이다. 주취상태로 인해 개인은 위험에 방치될 수 있고 범법행위로 공권력이 개입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가 유발 될 소지가 많이 있다. 즉, 주취자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보호라는 이중적 문제인 것이다.

최근 주취자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입법적 시도를 하였다.³⁾ 그러나 사회적 관심과 정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찰을 비롯하여 주취자와 관련된 복지행정기관들의 관할 회피 경향과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적 가치들(예컨대 보호대상인가? 통제대상인가?)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아 그 대안들이 관련 기관들로부터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

더욱이 적절한 사회적 대처의 부재 상황에서 다양한 범죄사건과 분쟁 및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경찰의 현실은 ‘일시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건강상 위험이 있으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주취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경찰 입장에서도 주취자 처리 문제는 가장 고심하는 문제 중 하나로서 경찰 지구대 야간 업무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고, 이성을 잃은 주취자의 난폭한 언행으로 인해 경찰력의 낭비와 경찰관 사기 저하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주취자 대응 실태와 제반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사

3) 2004년 10월 경찰청에 의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취자 보호법」’이라 한다)」안이 마련되고 2005년 9월 이 법률안이 서재관 의원에 의해 국회 발의되었으나 각계의 반대로 결국 2008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됨, 2009년 6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외 12명은 경찰직무집행법 4조 ‘주취자 처리에 대한 구호조치’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4) 이호용,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9, 3면.

회적 대처의 미비로 인한 주취자 인권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및 프로그램 등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주취자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인권 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젠,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통제’라는 이중적 요구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명확한 태도 정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1) 현행 법제도하에서 경찰에서의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 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경찰관서에서의 현장참여 관찰, 주취경험자의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의 주취자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취자를 상대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주취자 처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일선 경찰관들의 대응 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음주 소란경험자와 음주 소란자를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설문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주취경험자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검토하였고 서울의 일선 지구대 야간근무실태를 관찰하였다. 또한, 주취자 폭력 문제를 보도했던 기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언론사에 제보된 경찰의 과잉행위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주취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이 지적하는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일선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자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현행 주취자 대응에 있어서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통제’의 균형적인 사회적 대처를 위해 바람직한 법·제도적 대안 제시

본 연구는 외국의 주취자 처리 관련 입법례와 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각국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외국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고, 경찰의 주취자 관리 매뉴얼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취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1) 경찰의 주취자 문제에 관한 일반적 선행연구

우리나라 경찰의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최근 수행된 연구로서는 2009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⁵⁾이 있다. 이 연구는 상습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나, 경찰의 주취자 관리 실태 파악에 있어서는 실증적 실태 연구가 아닌 주취소란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현황 및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 발생 현황 등 통계자료에 의존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09년 치안정책연구소 위촉연구과제로 수행된 이호용의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방안”⁶⁾에 관한 연구는 경찰의 현행 주취자 처리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주취자 처리 실태 분석에 있어서는 순찰지구대의 주취자 처리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 주취자안정실 운영 실적,

5) 하혜영 외,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6) 이호용, 전게서, 2009.

전체 범죄건수에서 주취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등 형식적 통계자료에 한정되었다.

외국 경찰의 주취자 처리에 관한 연구로는 2009년 경찰청 단기 연수결과보고서인 이명원의 “영국 알콜관련 범죄와 무질서 대응전략: 효과분석 및 도입방안 검토”⁷⁾가 있다. 이 연구는 주취자 처리에 관한 영국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다룬 연구로서 우리나라 ‘주취소란자 등’ 처리실태 및 문제점, 영국의 관련 입법과 기관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주취자 보호 제도 및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개선책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으나, 주취자 보호 및 처리에 대한 경찰의 인식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는 것이 아쉬움이다.

기타 관련 연구로서는 2009년 박동균 외,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연구: Broken Window Theory 관점에서”⁸⁾와 2007년 광병선 외,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취자 보호를 중심으로”⁹⁾가 있다. 2009년 연구는 9개 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수용자 보건·의료 처우의 현황 및 문제점, 외국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수용자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선진국의 구금시설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을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2007년 연구는 경찰의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현행법에서의 보호조치 구조 및 경찰의 주취자 보호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어 여전히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자 인권 보호 실태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법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취자 인권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적 실태분석 연구는 전무하다.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참여관찰, 설문을 통한 인식 조사 등 실태조사가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은 한계를 갖고 있다.

7) 이명원, “영국 알콜관련 범죄와 무질서 대응전략: 효과분석 및 도입방안 검토”, 경찰청, 2009.

8) 박동균 외,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연구: Broken Window Theory 관점에서”, 한국치안행정논집, 2009.

9) 광병선 외,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취자 보호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007.

(2)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선행연구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주취자 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알코올중독자의 치료 재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의 알코올중독자 입원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서비스 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들에 한정되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심도 깊은 알코올중독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¹⁰⁾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알코올중독자 입원치료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알코올중독자 치료의 전국적 현황에 대한 연구¹¹⁾와 일부 입원병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¹²⁾, 입원 알코올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이 단주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¹³⁾, 알코올중독자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¹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들은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입원 치료프로그램을 알리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치료효과성의 검증을 시도한 연구로 볼 수 있다.

2000년도 이후 알코올중독자의 입원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료 체계와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¹⁵⁾ 그리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알코올중독자의 가족 지원을 위한 심리적 치료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¹⁶⁾, 여성 알코올중독 예

-
- 10) 김정빈, “한국에서의 알코올중독 치료모델”, *Culture and Alcoholism*, 연세대학교 의대 정신과, 1992; 윤명숙, 알코올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2.
- 11) 유채영, “알코올문제의 개입 현황 및 제언”, 지역사회정신보건 제1권 제1호, 2002.
- 12) 이효순 외, “알코올중독 환자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 제1권 제1호, 1996.
- 13) 송수진, “알코올중독 입원환자에 대한 변화동기 강화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14) 윤명숙 외, “알코올중독자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권 제2호, 1995.
- 15) 정원철, “알코올중독자의 입원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5집, 2003; 고성희, “알코올 중독자의 주의집중력 향상을 위한 동작치료프로그램의 효과”, *Korea sport research*, 제16권 제4호, 2005.
- 16) 김규수,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기능과 대처행동이 알코올 중독자의 병력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2권 제1호, 2006; 박상도, “스트레스와 가족부담감 관계 연구: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4집, 2009.

방을 위한 연구¹⁷⁾들이 수행되었다. 한편, 법적인 관점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치료감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¹⁸⁾

즉,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주취자 관련 연구는 주로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알코올 중독자 입원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연구로서 경찰활동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취자들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와 관련된 경찰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2009년부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습주취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¹⁹⁾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의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 “상습주취소란자 가운데 만성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어 일선 경찰관서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단순 주취자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경찰의 주 보호대상이 되는 단순주취자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찾다 보기가 어렵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문헌조사

기존의 연구 논문, 공공기관의 보고서, 업무 매뉴얼, 언론보도, 백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외국 법령, 외국 경찰기관의 보고서 등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취자 보호 및 경찰의 주취소란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현장참여관찰

17) 장수미,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10권 제2호, 2009.

18) 성경숙·김성돈,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2008.

19) 정규열, “상습 주취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 시범실시 운영성과 분석 및 주취자 처우 개선 방안”, 음주범죄 근절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 자료집, 2009.10.30.

현장 참여관찰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수행되었다. 참여관찰 장소로 부산 해운대경찰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 개설되는 여름경찰서의 관광객 음주소란 행위가 매년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고 해운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야간 주취자 처리 문제로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선정 배경이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습 주취자 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 또한 부산 해운대경찰서를 참여관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현장참여관찰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현장참여관찰 일정 및 대상 경찰관서

일정	대상 경찰관서	내용
2010. 07. 16(금) 21:00-02:00	부산 해운대 여름경찰서	- 해운대 해수욕장내 주취자 처리 실태 참여관찰 실시 - 근무중인 경찰관과의 인터뷰 실시
	부산 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	-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할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 실태 참여관찰 - 순찰차 동행하여 주취자 신고시 현장 처리 실태 관찰
2010. 07. 17(토) 22:00-02:00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상 동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 체포 또는 임의동행된 주취자 처리 실태 조사 - 경찰서내 주취자 안정실 및 주취자 안전시설 실태 조사

(3) 설문조사

설문 대상은 경찰관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경찰관 설문은 현재 지구대에서 주취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혹은 과거 주취자 상대 경험이 있는 경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무응답을 제외한 설문 433명을 분석하였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행위로 단속되었던 교육대상자 및 일반 주취 경험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무응답을 제외한 설문 407명을 분석하였다.

경찰관 대상 설문은 편의표집방식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간 설문이 진행되었고 일반인 설문은 편의표집과 스노우볼 (snowball) 표집방식으로 2010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4)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는 주취자를 상대한 경찰관과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 각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관의 경우 경찰교육원에 직무교육 중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일반인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 되었거나 경찰관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여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인터뷰로 인한 시간적 손실 등의 우려로 직접 면담 대상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화 면담, 인터넷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대상자의 신상관련 부분은 연령 및 성별을 제외하고는 생략 하였고, 시간적 손실에 대한 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취상태에서 보호조치 되는 일련의 과정을 간단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와 운영제도에 관하여 분석하고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일반인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한다. 설문분석은 주취경험 일반인들의 경찰의 폭력, 폭언,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실태와 일반인들의 음주소란자와 음주에 대한 인식, 주취자 문제에 대한 경찰의 책임에 대한 인식,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의 업무환경과 음주소란 문제에 관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음주소란자의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취자 문제로 인한 경찰관의 인권 문제와 업무환경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산 해운대경찰서관내 여름경찰서, 우동지구대, 중동지구대, 형사과에서의 현장참여관찰과 현장 경찰관들과의 면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찰관 및 일반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고 일선 경찰관들이 주취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본 이유에 관한 분석과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취자 보호 관련 국제법규 중 유럽인권협약 관련 조항과 그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주취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 독일)의 사례 및 법체계를 자세히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장 설문조사 결과, 제4장 현장참여관찰 및 면담 그리고 일반인 심층인터뷰 결과를 각 장에서 논의하였는 바, 현행 주취자 보호체계에 관한 입법적·정책적 제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장 현행 경찰의 주취자 보호 체계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주취자 실태

경찰의 보호 대상이 되는 ‘주취자’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호에서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법률을 근거로 경찰청 훈령인 주취자보호실운영규칙 제5조는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특히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기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주취자안정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자로, 단순히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주취소란자는 행위의 특성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음주 후 고성방가나 노상방뇨 등을 통해 타인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초래하는 경우 ‘무질서형 주취소란자’, 무질서 수준의 비행을 넘어서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고,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범죄형 주취소란자’로 분류할 수 있다.²⁰⁾

또한, 주취행위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서 ‘일회성 주취자’와 ‘상습성 주취자’로 나눌 수 있다. 상습주취자는 주취상태로 수회에 걸쳐서 경범죄 처벌을 받거나, 술에 취해 이웃주민들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의 잦은 민원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등을 의미

20) 하혜영·유규영,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54호, 2009년 12월 17일, 3면.

한다.²¹⁾

이렇게 주취자를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범죄형 주취소란자’가 사회의 질서유지에 가장 큰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범죄까지 이르지 않는지만 사회질서를 해치는 ‘무질서형 주취소란자’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유사한 주취소란 행위를 반복하는 ‘상습 주취소란자’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최근 주취자소란자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경찰의 보호조치상의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특정된 자료를 통해 주취소란자 문제의 실태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취자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찰의 부담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9.4명으로서, 남자(17.1명)가 여자(1.6명)의 10.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그리고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경우는 2001년 4만 1천 385명에서 2006년 5만 9천 979명으로 44.9%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진료비는 2001년 323억원에서 2006년 717억원으로 12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³⁾ 또한,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약 20조 990억원, GDP대비 2.9% 수준으로서 일본(GNP대비 1.9%), 캐나다(GDP대비1.09%), 프랑스(GDP대비 1.42%)보다 폐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그리고 지난 5년간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음주소란으로 단속된 건수가 연평균 1만 4천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21) 앞의 글, 4면.

22) 통계청, 2009, “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09년 8월 31일자

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 5년간 35%, 진료비용은 93%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신질환 분석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08년 2월 15일자

24) 이선미 외, 2008,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정의학회지, 제29권 3호; 하혜영·유규영, 앞의 글, 1면 재인용

<표>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경범죄위반건수		117,236	141,502	90,063	103,401	307,912
음주소란 등 (경범죄 25호)	건수(건)	11,648	11,614	10,597	11,731	25,629
	비율(%)	9.9%	8.2%	11.0%	11.3%	8.3%

자료: 경찰청, 2009, 내부자료

또한 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도 총 범죄자는 1,179,445명이고 이중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10,679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에서 약 17.9%를 차지하였고²⁵⁾ 2009년도 총 범죄자 1,278,802명중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10,536명으로 약 16.5%를 차지하고 있다.²⁶⁾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2008년도 기준 공무집행사범은 18,801명이고, 이들 중에서 주취상태의 범죄자는 11,474명으로 약 61.0%를 차지하였고,²⁷⁾ 2009년에는 19,092명중에서 주취상태의 범죄자가 11,048명으로 약 57.9%를 차지하였다.²⁸⁾ 즉, 공무집행사범의 대부분이 주취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주취상태 범죄 발생 실태

(단위: 명, %)

연도	구분	범죄전체	강력범죄(흉악)				폭력 등	공무집행 방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2005	총 범죄	1,049,250	938	2,797	1,044	8,355	341,447	11,105
	주취상태범죄	190,335	290	398	486	2,649	140,301	5,837
	주취범죄율	18.1%	30.9%	14.2%	46.6%	31.7%	41.1%	52.6%
2006	총 범죄	1,033,914	895	2,836	1,039	10,081	283,683	12,639
	주취상태범죄	165,764	287	453	465	3,051	103,072	6,707
	주취범죄율	16.0%	32.1%	16.0%	44.8%	30.3%	36.3%	53.1%
2007	총 범죄	1,008,253	873	2,922	982	9,337	305,386	15,519

25)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326-327면

26)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384-385면

27) 대검찰청, 2009, 전게서.

28) 대검찰청, 2010, 전게서.

	주취상태범죄	180,122	296	435	390	2,983	109,220	9,439
	주취범죄율	17.9%	33.9%	14.9%	39.7%	31.9%	35.8%	60.8%
2008	총 범죄	1,179,445	909	3,737	1,413	12,902	401,691	18,801
	주취상태범죄	210,067	333	559	687	4,076	136,003	11,474
	주취범죄율	17.9%	36.6%	15.0%	48.6%	31.6%	33.9%	61.0%
2009	총 범죄	1,278,802	1,075	5,030	1,407	13,853	400,136	19,092
	주취상태범죄	210,536	405	762	633	4,148	132,853	11,048
	주취범죄율	16.5%	37.7%	15.1%	45.0%	30.0%	33.2%	57.9%

자료: 대검찰청, 2010, 「2010범죄분석」, 대검찰청, 2009, 「2009범죄분석」, 대검찰청, 2008, 「2008범죄분석」, 대검찰청, 2007, 「2007범죄분석」, 대검찰청, 2006, 「2006범죄분석」

여러 통계자료가 반증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취자 문제는 공공질서 유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우리나라 경찰의 주취자 보호와 그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사범의 대부분이 주취자 처리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경찰의 주취자 대응 방식과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행사의 근거와 절차에 관한 법제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제2절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단순 주취자로서 의식이 불명하거나 자기 통제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거나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⁹⁾

2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주로 일시적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상습적 요보호 주취자에 대한 사항은 정신보건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동법률에 따르면 상습적 요보호 주취자 즉 알코올중독자는 보호자에 의한 의료기관 입원조치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한 의료기관 입원조치를 하거나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등이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응급입원을 시키고 사후 계속적 입원 여부를 심의하여 조치하게 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알콜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³⁰⁾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 거부금지³¹⁾, 응급의료 방해 금

-
- 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 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1996.8.8>
-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1996.8.8>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30) 정신보건법 제26조 (응급입원)

-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개정 2000.1.12, 2003.5.29>
-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개정 2008.3.21>
-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지³²⁾, 미수금의 국가 대불³³⁾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과 의료급여법 등에서 알코올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

<p>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 주취자 중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p>
--	---

-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미수금의 대불)
 -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02.3.25>
 -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황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2.3.25>
- ⑥ 미수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황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3.25>

	<p>을 포함(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p> <p>○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 발견시 즉시 응급의료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 금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조)</p> <p>※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1항)</p> <p>○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설치 (제19조)하고,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 후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 관리기관에 대불 청구 (제22조)</p>
<p>구급대원의 응급환자 이송(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p>	<p>○ 화재등 재난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대상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의료기관에 이송 (제28조)</p> <p>○ '술에 취한 자'는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요청거절 가능하나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이송토록 지침 (제31조)</p>
<p>알코올 중독자의 응급입원(정신보건법)</p>	<p>○ 정신질환자(알코올 중독자 포함)로 추정되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에 의한 입원(동법 제2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 25조)을 시킬 수 없는 때</p> <p>※ 정신질환자: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정신보건법 제3조)</p> <p>○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가능 (72시간 이내)</p>

경찰관서에서의 일시적 보호를 위해서 경찰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전국 시 단위 이상 154개 경찰서에 ‘주취자안정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취자안정실’은 주취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와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취자의 언행, 취기의 정도 및 주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주취상태에서 해소될 때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소이다. 2000년 11월에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훈령인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보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표3>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 [2000. 11. 24 경찰청훈령 제338호] 주요내용

제2조(설치) 경찰서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취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취자안정실을 둘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 주취자안정실은 일과중에는 생활안전과장(생활안전수사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일과이후·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

제5조(보호대상) 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자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주취자안정실에 보호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
2.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
4.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5. 기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제10조(근무자의 배치) 경찰서장은 주취자안정실에 입실한 보호대상자 수와 그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근무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법적 근거 및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 경찰 내부 운영상의 곤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점차 감소되어 2007년에는 40개소로 줄어들게 되었고,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4> 연도별 전국 경찰관서 주취자안정실 설치운영 현황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	31	31	31	31	31	31	28	24
부산	14	14	14	13	13	13	13	13
대구	8	8	8	0	0	0	0	0
인천	7	7	7	3	3	3	1	0
광주	5	5	5	5	5	0	0	0
대전	5	5	5	5	5	5	0	0
울산	4	4	4	0	0	0	0	0
경기	26	26	26	16	16	9	3	1
강원	7	7	7	3	3	0	0	0
충북	4	4	4	0	0	0	0	0
충남	6	6	6	0	0	0	0	0
전북	7	7	7	0	0	0	0	0
전남	5	5	5	3	3	0	0	0
경북	11	11	11	1	1	0	0	0
경남	12	12	12	5	5	2	0	0
제주	2	2	2	2	2	2	2	2
계	154	154	154	87	87	65	47	40

한편 경찰은 2006년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을 개정하여 각 경찰서 유치장마다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유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모든 경찰서에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표5>유치장설계 표준규칙(전부개정 2006.3.22 예규 제349호)

제8조(보호 유치실)

- ①유치장에는 주취자 및 자해우려자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 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6.6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②보호 유치실은 사방을 벽으로 설치하고,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 장치를 설치하여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문에는 가로 0.2미터, 세로 0.15미터 크기의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 ③보호 유치실에는 출입문을 포함한 모든 벽면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설비 및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보호 유치실 내의 화장실과 세면대는 일반 유치실에 준하여 설치하되, 화장실의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만을 설치하고, 차폐막에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⑤기타 보호 유치실의 설치기준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유치실과 같다.

제3절 현행 주취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체계 및 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가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취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초동조치를 하는 일선 경찰관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긴급구호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주취자를 보호조치함에 있어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경찰관으로서는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찰관이 주취자를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하다가 주취자가 사망한 사건이 간혹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렇듯 주취상태로 인한 요보호자의 판단 기준의 추상성과 경찰관들의 비전문적 판단은 때론 보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구호 요청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현행법은 경찰이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후 감독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관내에 적당한 구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가 곤란하다. 그리고 외상이 없는 단순 만취자인 경우 119 구급대에서 출동을 거부하거나 출동하더라도 의료기관 호송시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주취자 또는 가족이 확인되나 인수를 거부하는 주취자의 경우 추후 진료비 청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³⁴⁾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주취자안정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취자안정실이 처음 설치된 2000년에는 전국에 154 개소였다가 2007년에는 40개소로 줄어들었고, 2009년 9월에는 23개로 85%가 줄었다. 일선 경찰서에는 주취자 안정실을 이용했다가 갑작스런 자해소동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경찰에게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보호조치된 주취자가 술에서 깰 때까지 경찰관이 옆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성 주취자의 경우 남성 경찰관들과의 대응과정에서 성추행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³⁵⁾

한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³⁶⁾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34) 하혜영·유규영,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54호, 27-28면.

35)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89554>(2009.09.16 검색)

36)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감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제4조에 의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는 지구대나 주취자안정실에서 일정 시간 보호하게 되는데 이 때 주취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구만으로는 피보호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주취소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골절상,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주취자 보호 체계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문제점, 입법상의 불명확성 그리고 실효성 없는 제도의 운영, 보호조치를 위한 장구·장비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들은 주취자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일반인들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주취 문제에 관한 인식 및 현행 우리나라 주취자 보호관련 법체계, 제도에 관한 인식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설문조사 결과

제 1절 방법론

근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모욕죄 적용,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등으로 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주취자의 인권 침해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취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현황 및 실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주취자를 대하는 데 있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경찰의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1. 진행과정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음주 소란경험자와 음주소란자를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로 나누어 실시된다. 음주소란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난 5년간 음주 후 경찰대면 경험을 묻고, 경찰에 대한 인식, 음주 및 음주소란자에 대한 견해, 음주와 경찰에 대한 경험, 음주 소란자 규제 관련 인식, 개인적 성향의 위험도,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75문항을 질문하였다.

질문항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은 경찰과 주취자 충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본 연구진은 첫째, 지구대 야간방문을 통해 주취자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경찰의 대응 방식을 관찰하였고, 둘째,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주취경험자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언론에 주취자 폭력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언론사에 제보된 경찰의 과잉폭력행위에 대한 사례들도 확인하였다. 넷째, 또한 해외에서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찰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하였다.

2. 설문내용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취 경험자들과 주취자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취 소란 경험이 있는 일반인 대상 설문지는 지난 5년간 음주후 혹은 음주상태에서 경찰을 상대하거나 경찰서에 가본 사람을 대상으로 1) 경찰에 대한 기본적 인식, 2) 음주 및 음주소란자에 대한 평상시 견해, 3) 개인의 생활패턴의 위험요소들, 4) 기본 인구학적 요소들을 묻고, 이후 구체적으로 음주상태에서 경찰을 상대한 구체적 경험을 물었다. 음주 후 경찰에 대한 경험을 묻는 항목은 1)물리적 폭력, 2)언어 폭력, 3)직권남용적 태도, 4)성희롱적 언어 및 행위, 5)수치심 유발 행위, 6)경찰서 시설에 관한 문항, 7)음주 소란자에 관한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주취자를 상대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1)인권관련교육, 2)음주에 대한 견해, 3)기본 인구학적 요소, 4)주취자 상대 경험 관련 질문, 5)주취자 관련 규제 관련 질문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3. 설문에 사용된 구체적 변수

경찰에 대한 인식은 5개의 문항으로 질문되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가진 권한은 증대되어야 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언어적 위협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폭력적 위협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경찰은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인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진압은 오히려 일반인에게 신뢰감을 준다”와 같은 구체적 질문내용이 선택되었다. 이 5개의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로 1점에서 4점으로 응답하도록 설계 되었다.

음주 및 음주 소란자에 대한 견해는 술취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여성음주자에 대한 인식, 음주 소란자와 경찰의 역할에 대한 문항으로 13개의 문항이 선택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1점에서 4점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물리적 행위에 대한 질문은 참여관찰, 진정위 사례, 기자 인터뷰를 통해 취합된 경찰의 물리적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모아서 12가지 문항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러한 경험 유무에 대하여 “경험있다”와 “경험없다”로 이분형 응답 범주화하였고, 과

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³⁷⁾.

언어적 폭력에 관한 사항은 물리적 폭력 행위와 동일한 문항 추출 과정을 거쳐 9개의 구체적 사례를 질문하였고, 그러한 경험 유무에 대하여 “경험있다”와 “경험없다”로 이분형 응답 범주화하였고,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경찰의 직권남용 관련 항목들도 위의 사항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10개 항목으로 질문하였고 그러한 행위의 경험 유무에 대하여 “경험있다”와 “경험없다”로 이분형 응답 범주화하였고,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성희롱 관련 문항, 수치심 유발 행위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각각 4개와 5개의 항목으로 질문하였고 그러한 경험 유무에 대하여 “경험있다”와 “경험없다”로 이분형 응답 범주화하였고,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화장실 시설에 관한 질문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성별이 구별되지 않은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에 관한 총 두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위의 기타 항목과 동일하게 “그렇다”와 “아니다”로 이분형 응답 범주화하였고,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음주 소란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규제방식에 대한 질문은 벌금, 법적 처벌, 그리고 사회치료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효과적인 제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1점에서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또한 더욱 구체적인 응답을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주취경험자의 제안을 적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4. 설문기간

경찰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재 지구대에서 주취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혹은 과거 주취자 상대 경험이 있는 경찰 500명에 대하여 2010년 7월에 대

37) 구체적 질문사항은 Appendix I을 참고하도록 한다.

략 한 달가량 설문을 실시하여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한 데이터 433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음주소란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적발 교육대상자대상자 및 일반 주취 경험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였고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통해 일반 주취 경험자 500명 중 321명의 유효한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6> 표집 방식 및 기간

	표집대상	
	음주소란경험자	경찰관
표집방식	스노우볼 (snowball) 표집 편의 표집	편의 표집
기간	2010년 8월1일~31일	2010년 7월1일~7월 31일

5. 분석 방법

주취 소란 경험이 있는 일반인 대상 설문지는 지난 5년간 음주 후 혹은 음주상태에서 경찰을 상대하거나 경찰서에 가 본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인식, 음주소란경험 및 경찰의 폭력경험, 음주소란자 규제방식을 중점으로 질문하였는데, 실태조사의 특성상 일반인과 경찰조직의 반영하여 보여주는 기술통계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각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질문문항들이 설문으로 만들어졌고, 각 항목들은 주축요인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프로맥스(promax) 회전방법을 통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만 추려내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제 2절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가. 일반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설문조사의 경우 총 32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남자는 92.5%(297명), 여자는 7.5% (24명)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21세~79세까지 분포하였고, 12.5%(40명)의 응답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고, 86.3%(276명)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명이 보호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기타는 3명으로 1%에 해당하였다. 응답자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2.2%(7명)가 초등학교 졸업, 3.8%(12명)가 중학교 졸업, 27.8%(89명)가 고등학교 졸업, 최빈값에 해당하는 66.3%(212명)이 대학교 졸업 혹은 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9 %에 해당하는 219명의 응답자가 정규직이었고, 16.8%에 해당하는 52명이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13명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직업이 없는 경우도 25명으로 8.1%에 해당하였다.

<표7> 일반시민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총 321명	빈도	%
성별		
남자	297	92.5
여자	24	7.5
합계	321	100
연령	21-79	
거주형태		
혼자 산다	40	12.5
가족과 함께 산다	276	86.3
보호센터에 거주한다	1	.3

기타	3	.9
합계	320	100
학력		
초등학교 졸	7	2.2
중학교 졸	12	3.8
고등학교 졸	89	27.8
대학교 졸/이상	212	66.3
합계	320	100
고용형태		
정규직	219	70.9
비정규직(계약직)	52	16.8
일용직	13	4.2
무직	25	8.1
합계	309	100

나. 경찰관

조사에 응한 음주소란자 경험 경찰관들은 500명이고, 이중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433건이다. 이중 인구학적 요인들을 기입하지 않은 채, 기타 다른 문항에만 응답한 경찰관들이 있었으나, 인구학적인 요소보다 주취자 인권에 대한 의견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인구학적 요소에 응답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의견도 빈도분석에 사용하도록 한다. 총 433건 중 367명이 남자, 8명이 여자, 이고 58명은 성별은 기입하지 않았다. 경찰관 조사에는 남자경찰관이 조사에 응한 것을 알 수 있다. 만 20세에서 59세까지 연령이 분포하였고 1급서에 소속된 사람이 271명 (73.8%), 2급서 소속은 56명 (15.3%), 3급서는 40명 (10.9%)이었다. 근무지에 대한 질문에는 372명의 자료가 유효하였는데 이중 25%에 해당하는 93명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11%에 해당하는 41명이 경기도, 8.9%에 해당하는 32명이 부산에 근무하였다. 기타 도시로는 인천, 대구가 있었고 기타 지방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었다. 현재 소속된

부서는 43.4%에 해당하는 162명이 지구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라고 답하였고, 18.5%에 해당하는 69명이 생활안전과소속, 10.7%(40명)가 경비소속이었다. 이외에도, 수사(담당), 정보 등에 골고루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88.4% (329)명이 현재 계급이 경위였고, 경사는 5.9%, 경장은 4.3%, 순경은 0.8%, 경감은 0.5%이었다. 이들 경찰의 학력수준은 유효 집단의 46%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고, 21.5%는 전문대학, 28.3%는 4년제 대학의 학력을 소지하였다. 이밖에 16명(4.3%)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경찰관중 81명(22%)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현재까지 인권과 관련하여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63%는 1번, 23%는 2번, 12%는 3번이상의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8> 경찰응답자들의 기술통계

	범주	빈도	%
성별	남자	367	97.9
	여자	8	2.1
	합계	375	100
연령	--	20-59	--
근무지	1급	271	73.8
	2급	56	15.3
	3급	40	10.9
	합계	367	100
지역	서울	93	25
	경기	41	11.0
	인천	20	5.4

	대구	22	5.9
	부산	32	8.6
	기타	164	44
	합계	372	100
소속	지구대	162	43.4
	생활안전과	69	18.5
	경비	40	10.7
	수사	37	9.9
	정보	14	3.8
	기타	51	13.7
	합계	373	100
계급	순경	3	.8
	경장	16	4.3
	경사	22	5.9
	경위	329	88.4
	경감	2	.5
	합계	372	100
학력	고등학교	169	45.9
	2년제 대학교	79	21.5
	4년제 대학교	104	28.3
	대학원이상	16	4.3
	합계	368	100

민원여부	있다	81	22.0
	없다	287	78.0
	합계	368	100

2. 주취 경험자들의 위험요소 및 경찰과의 충돌 경험

가. 주취자 생활의 위험요소들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의 과거 행동들이 위험 요소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2)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지, 3) 음주 후 싸움을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위 질문들은 모두 지난 1년(2009년 7월 1일 이후) 이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표9> 음주관련 위험한 생활패턴

	범주	빈도	%
음주 횟수	거의 없다	10	2.7
	가끔	69	18.4
	비교적 자주	208	55.6
	매우자주	87	23.3
	합계	374	100
만취상태	만취경험없음	156	42.0
	5번이하	159	42.7
	자주	56	15.1
	매우자주	1	0.3
	합계	372	100
음주운전 경험	유	160	43.1
	무	211	56.9
	합계	371	100
음주후 싸움경험	유	36	9.7
	무	334	90.3
	합계	370	100
미란다 원칙고지 여부	유	111	75.5
	무	36	24.5
	합계	147	100

첫째, 지난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끔 마셨다’(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응답은 18%, ‘비교적 자주 마셨다’(2주에 1~2번)는 응답은 55.6%, ‘매우 자주 마셨다’(1주일에 3번 이상)는 응답은 24%로 전체 응답자 중

97.2%가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나 자주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한 적은 없다’가 156명으로 42.0%, ‘없는 편이다’(1년에 5번 이하)가 159명으로 42.7%로 나타났으며, ‘자주 있다’(2주에 1~2번)와 ‘매우 자주 있다’(1주일에 3번 이상)는 전체 응답자 중 각각 56명, 1명으로, 15%와 0.3%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년간 ‘음주운전’을 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인 160명이 ‘해본 적 있다’고 답하였으며, 음주운전 횟수는 1회는 64명, 2회 이상은 78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입건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9%인 118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입건된 횟수는 1회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회(25명)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47명 중 111명(75.5%)이 ‘그렇다’고 답했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음주 후 싸움’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0.3%에 해당하는 334명이 ‘없다’고 답하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6명에 불과했으며, 음주 후 싸움의 횟수는 1회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 후 싸움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2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입건된 횟수는 1회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 음주상태에서의 경찰 폭력 경험

1) 물리적 폭력

경찰의 물리적 행위는 11가지 구체적 물리적 폭행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분형 범주로 입력된 각 사례에 대하여 “경험없다”와 “경험있다”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었고 11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험있다”로 분류되었다.

이중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주취자중 87.2%에 해당하는 272명이고, 4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 주취상태에서 1가지 이상의 폭력행위를 당하

였다. 11가지 모든 폭력행위를 경험한 주취자는 2명이고, 1가지 행위를 경험한 주취자가 가장 많았다.

<표10> 경찰의 물리적 폭력

	빈도수	%
경험없다	272	87.2
경험있다	40	12.8
합계	312	100

2) 경찰의 언어 폭력

경찰로부터 경험한 언어적인 학대행위를 측정^한 결과 전체 73% (22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혀 경험이 없었고 26.8%에 해당하는 82명의 응답자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물리적 폭력행위를 보고한 주취자가 40명에 인 것을 감안하면 경찰에 의한 언어학대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위협적 언어사용

	빈도수	%
경험없다	224	73.2
경험있다	82	26.8
합계	306	100

언어 폭력의 또 다른 측정으로서, 차별적인 언행을 물었다. 경찰이 여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을 사용하였는지를 묻은 항목에서는 93%에 해당하는 주취자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7% (26명)이 여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12> 차별적 언어사용

	빈도수	%
경험없다	300	93.2
경험있다	22	6.8
합계	322	100

다. 직권남용 관련 행위

1) 사생활

경찰이 수사기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주취자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95%에 해당하는 주취자들은 직권남용에 의한 사생활 침해 행위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16명의 주취자들은 경찰이 핸드폰을 뺏거나, 핸드폰을 뒤지는 등의 사생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표13> 사생활 침해

	빈도수	%
경험없다	359	96
경험있다	16	4.0
합계	375	100

2) 수갑관련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수갑을 채우거나, 수갑을 바닥과 가까운 곳에 채워서 정상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게 하거나, 수갑을 강하게 채워 손목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총 57명에 의해 보고되었다.

<표14> 수갑관련 경험

유형	빈도(명)	비율(%)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수갑을 채웠다	23	40
수갑을 땅바닥과 가까운 곳에 채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12	21
수갑을 세 개 채워 손목에 상처를 입혔다	22	39
합계	57	100

3) 강제 혹은 목살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 행위 혹은 목살행위에 대한 경험은 3가지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총 55명이 경찰의 강제행위에 응답하였다. 13명은 경찰이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21명은 병원치료 요구를 목살당하였고, 21명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15> 강제 혹은 목살관련 구체적 유형

유형	빈도(명)	비율(%)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하였다	13	24
병원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목살하였다	21	38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는 부탁을 목살하였다	21	38
합계	55	100

라. 성적 폭력

경찰의 성적 폭력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언어 사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인 행위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1) 성적 불쾌감 언어

주취상태에서 경찰이 대상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불쾌한 음담패설을 하였는지 물었는데, 96%에 해당하는 주취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4.3%에 해당하는 주취자는 경찰에 의한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언어 희롱을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표16> 성적 불쾌감 언어

	빈도수	%
경험없다	309	95.7
경험있다	4	4.3
합계	313	100

2) 성적 불쾌감 행위

경찰이 주취자에게 성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직접 하였는지 묻은 항목에서는 98.5%에 해당하는 주취자가 “그런 적 없음”을 택하였고, 전체 주취경험자 중 1.5%에 해당하는 5명만이 경찰에 의한 성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성적 언어 희롱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17> 성적 불쾌감 행위

	빈도수	%
경험없다	319	98.5
경험있다	5	1.5
합계	324	10

마. 수치심

경찰에 의한 수치심 유발 행위 경험은 주취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측정하여 보았다. 관련 항목들은 1) 화장실 사용을 불허하였다, 2) 생리적 현상을 조롱하였다, 3) 화장실을 사용하는 도중 기습적으로 문을 열거나 방해하였다, 4) 침을 뱉었다, 5) 경찰서 바닥을 기게 하거나 끌고 다녔다 에 해당한다.

응답자중 약 93%에 해당하는 주취경험자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6.2%에 해당하는 사람은 1~2가지 행위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5개 모두 경험한 응답자는 총1명에 그쳤다.

<표18> 수치심 유발 행위

	빈도수	%
경험없다	299	92.6
경험있다	24	7.4
합계	323	100

3. 음주 소란자와 음주에 대한 인식

가. 음주 소란자에 대한 인식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주소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음주소란자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민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6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9.5%를 차지하였으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268명으로 80.5%에 달하였다. 경찰의 경우 ‘그렇다’고 답변을 한 사람은 39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5.7%를 차지하였다. 즉, 일반 시민과 경찰 모두 음주소란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고, 경찰을 방해한다고 보는 경향이 짙었다.

반면, 음주소란자를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경우 주취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221명으로 65.7%를 차지하였다. 반면 음주소란자를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은 총 416명 중 301명에 해당하는 72.1%의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보호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조금더 짙었다.

즉, 경찰에게 주취자는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

<표19> 음주 소란자에 대한 견해

음주소란자에 대한 견해	선택지	시민		경찰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음주소란자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민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1.8	0	0
	그렇지 않다	59	17.7	18	4.3
	그렇다	226	67.9	259	62.3
	아주 그렇다	42	12.6	139	33.4
	합계	333	100	416	100

음주소란자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5.4	24	5.7
	그렇지 않다	97	28.9	93	22.2
	그렇다	192	57.1	236	56.5
	아주 그렇다	29	8.6	65	15.6
합계		336	100	416	100

나. 음주에 대한 관용도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는 음주에 대한 관용도는 어떠한지, 음주에 대한 관용도를 측정하였다. 음주에 대한 관용 측면에서 1) ‘법 조항에서 음주를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와, 2) ‘술 먹고 저지른 사소한 실수는 용납 가능한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질문하였다.

음주여부가 법조항에서 감경사유로 고려되는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는 일반인은 45.2%(152명), 경찰은 88.8% (372)명으로 의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음주 감경사유가 당연하다 여기는 일반시민은 54.8% (184명)이고, 경찰은 11.2%(47)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경찰집단이 음주가 감경사유로 참작되는 상황을 불합리 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음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

음주에 대한 관용도		시민		경찰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법조항에서 음주로 인한 감경사유는 당연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42	12.5	178	42.5
	그렇지 않다	110	32.7	194	46.3
	그렇다	170	50.6	40	9.5

	아주 그렇다	14	4.2	7	1.7
	합계	336	100	419	100
술을 먹고 한 사소한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9	14.6	103	24.7
	그렇지 않다	158	47.0	186	44.6
	그렇다	124	36.9	126	30.2
	아주 그렇다	5	1.5	2	0.5
	합계	336	100	417	100

또한 경찰의 경우 술 먹고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한 용납비율이 38.4%, 일반시민의 경우 실수 용납비율이 30%이다. 경찰과 일반시민 양 집단 모두 음주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이 오히려 비관용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음주소란자의 안정문제

음주소란자의 안정 문제에 대하여 주취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경찰서에 만들어야 하는지, 사회복지시설에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다.

일반시민의 62%는 경찰서에 주취자가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경찰의 63%은 경찰서에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표21> 음주 소란자의 안정 공간의 소속

음주소란자의 안정문제		시민		경찰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술에 취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경	전혀 그렇지 않다	27	8.2	90	21.7
	그렇지 않다	98	29.6	174	41.9

찰서 안에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166	50.2	123	29.6
	아주 그렇다	40	12.1	28	6.7
	합계	331	100	415	100
술에 취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은 사회복지시설에 만들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43	13.1	13	3.1
	그렇지 않다	133	40.4	25	6.0
	그렇다	130	39.5	181	43.7
	아주 그렇다	23	7.0	195	47.1
	합계	3296	100	414	100

음주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경찰서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긍정하는 시민의 경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유사한 반면, 경찰의 90.8 %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즉, 시민은 경찰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경찰은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음주소란자 문제에 대한 경찰의 책임

음주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1) 경찰이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지, 2) 경찰 시야에서 발생한 음주소란자 사고는 경찰의 책임인지, 3)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인권, 응급처치 등)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경찰이 술취한 사람을 보호해야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278명(83.5%)으로 나타난 반면, 경찰의 경우 241명(57.8%)이 술취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고 여기고 있었다.

경찰시야에서 발생한 음주소란자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경우 경찰 시야에서 발생한 음주소란자 사고가 경찰 책임이 아니라는 사람은

179명으로 53.9%였고, 경찰 책임이라는 사람은 153명으로 46.1%였다. 경찰의 경우, 경찰시야에서 발생한 음주소란자 문제를 경찰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찰은 사람은 76명으로 18.4%에 해당하여, 일반인의 시각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 교육수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일반인의 경우 경찰이 주취자 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은 290명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하여,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경찰의 경우 60.9%(251명)에 해당하는 경찰들이 주취자 보호 관련 교육 수강의 필요성을 느끼고있었다.

<표22> 음주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

음주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대처		시민		경찰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4.8	45	10.8
	그렇지 않다	39	11.7	131	31.4
	그렇다	249	74.8	228	54.7
	아주 그렇다	29	8.7	13	3.1
	합계	333	100	417	100
경찰 시야에서 발생한 음주소란자 사고는 경찰의 책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	8.1	99	24.0
	그렇지 않다	152	45.8	238	57.6
	그렇다	135	40.7	71	17.2
	아주 그렇다	18	5.4	5	1.2
	합계	332	100	413	100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인권, 응급처치 등)을 받아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3.6	31	7.5
	그렇지 않다	28	8.5	130	31.6
	그렇다	229	69.4	225	54.6

	아주 그렇다	61	18.5	26	6.3
	합계	330	100	412	100

4. 음주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책임에 대한 인식

가. 경찰의 책임의식

이렇듯 위에서 시민은 음주소란자 문제를 경찰에게 의지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상황에서, 경찰 집단 스스로는 음주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찰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하였다.

음주소란자 문제 해결이 경찰의 임무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62.4%의 응답자가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6%였다.

<표23> 음주 소란자문제의 경찰의 책임에 대한 경찰의 의견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음주소란자 문제 해결은 경찰의 임무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	8.3
	그렇지 않다	124	29.3
	그렇다	237	56.0
	아주 그렇다	27	6.4
	합계	423	100

음주소란자를 해결하는 문제는 경찰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경찰관들은 음주소란자들은 경찰의 도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보다 사회복지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보는 경향이 짙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384명으로 92.3%에 달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인원(32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나. 음주 소란자와 경찰의 강제력

‘음주소란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모두 4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0%를 차지한 반면, ‘경찰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37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표24> 경찰의 강제력 필요성에 대한 경찰의 의견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데 경찰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1.0
	그렇지 않다	37	9.0
	그렇다	239	57.9
	아주 그렇다	133	32.2
	합계	413	100

이러한 강제력 동원의 필요성을 지지하듯, 경찰관들은 이를 위한 경찰의 인력이 증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음주소란자를 단속하고 처리하기 위해 경찰의 인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65명으로 8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경찰인력 증강의 필요성에 대한 경찰의 의견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음주소란자를 단속하는데 있어 현재 경찰인력은 증가되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1.4
	그렇지 않다	45	10.8
	그렇다	232	55.8
	아주 그렇다	133	32.0
	합계	416	100

다. 음주 소란자 해결 방식에 대한 의견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데 있어 일반 시민들은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전체 답변자 중 124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한 반면, 경찰의 경우 17명으로 전체 경찰의 4.1%만 필요없다고 응답하여, 경찰이 더욱 강력한 법적 제제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 역시도, 62.6%(208)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음주소란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9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강력한 법적 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표26> 강력한 법적 제제의 필요성에 대한 경찰의 의견

음주관련 법		시민		경찰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음주소란자를 다스리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7.5	3	0.7
	그렇지 않다	99	29.8	14	3.4
	그렇다	170	51.2	207	49.8

	아주 그렇다	38	11.4	192	46.2
	합계	332	100	416	100

음주소란자 규제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음주소란에 대한 벌금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189명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136명)보다 많았다. 음주소란자 처벌의 강화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일반인의 64.9%(206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즉, 법적 처벌 강화의 효과성에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효과성을 기대하는 사람이 약 27.9% 많았다. 음주소란자를 위한 사회치료프로그램 수강 기회부여가 음주소란자 규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치료프로그램이 음주소란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3명으로 응답자의 81.4%에 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60명)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표27> 음주소란자 규제방식에 대한 의견

음주소란자 규제 인식		시민		경찰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음주소란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면 음주 후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26	8.0	47	11.4
	그렇지 않다	110	33.8	109	26.5
	그렇다	159	48.9	176	42.8
	아주 그렇다	30	9.2	79	19.2
	합계	325	100	411	100

음주소란자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강해지면 음주 후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22	6.8	3	0.7
	그렇지 않다	94	29.2	15	3.6
	그렇다	173	53.7	215	51.7
	아주 그렇다	33	10.2	183	44.0
	합계	322	100	416	100
음주소란자에 대한 사회치료프로그램(알코올 중독 치료 등)이 병행되면 음주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12	3.7	4	1.0
	그렇지 않다	48	14.9	23	5.6
	그렇다	212	65.6	215	52.1
	아주 그렇다	51	15.8	171	41.4
	합계	323	100	413	100

경찰관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첫째, 음주소란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음주 후 소란은 줄어들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2%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37.9%)보다 많았다. 둘째, 음주소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해지면 음주 소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98명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20배 이상 많았다. 셋째, 음주소란자에게 사회치료프로그램을 받게 하면 음주 소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6명으로 응답자의 93.5%에 달하였다.

즉, 경찰과 시민모두 음주소란자를 위한 사회치료프로그램이 음주소란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음주소란 벌금에 대한 기대효과가 가장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경우 음주소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혹은 음주소란자를 위한 사회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시민들은 기타의견으로, ‘신속한 귀가조치 내지는 가족에게 인계’를 언급하였

고, 그 다음으로는 ‘술이 깰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안정 필요’가 있었다. 또한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치료프로그램 마련’, ‘술 취한 사람에 대한 배려심 필요’, ‘주취 정도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응답한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았으며, 특이한 응답으로는 ‘음주 소란 행위를 촬영, 자신의 행동을 보고 반성하도록 하여 재발 방지’등의 의견이 있었다.

경찰이 제안한 기타의견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답변은 바로 ‘강력한 법적 규제 및 처벌 필요’였다. 그 다음으로는 ‘술이 깰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안정 필요’가 있었는데, ‘별도의 공간’으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또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치료프로그램 마련 필요’를 응답한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았으며, 특기할 만한 답변으로는 경찰, 복지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 간 연계’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 3절 경찰의 업무 환경 및 음주소란문제

1. 인권교육 관련

설문 대상 경찰관에게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1) 인권교육실시, 2) 음주소란자 대처 방식에 대한 교육 실시, 3) 음주소란자 대처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또는 4) 음주소란자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첫째, ‘최근 3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24명 중 249명에 해당하는 58.7%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교육 받은 횟수와 기간은 각각 ‘1회’(83명)와 ‘1일’(45명)이 가장 많았다.

둘째,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가 313명(74.2%)으로 ‘있다’라고 답한 109명(25.8%)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있다’라고 답한 사람 중 교육 받은 횟수와 기간은 각각 ‘1회’(43명)와 ‘1일’이 가장 많았다.

셋째, ‘경찰서 내에 음주소란자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8.8%인 37명에 불과했으며, ‘없

다'고 답한 사람은 91.2%인 382명에 달했다.

넷째, '경찰서 내에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28.6%에 해당하는 119명인 반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297명으로 71.4%에 달했다.

<표 28> 경찰서내 음주 소란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있다		없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인권교육	249	58.7	175	41.3	424	100
음주소란자 관리교육	109	25.8	313	74.2	422	100
음주소란자 훈련프로그램	37	8.8	382	91.2	416	100
음주소란자 관리 매뉴얼	119	28.6	297	71.4	416	100

2. 음주 소란자 경험 및 이에 대한 인식

가. 음주소란자의 위협성

음주소란자를 상대해본 경찰로서, 이들의 행위의 위협수준을 측정해보았다. 음주소란자가 사용하는 물리적 폭력행위가 질문에 응답한 경찰관 94.8%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들 음주소란자 진압을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라고도 거의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음주소란자의 물리적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3.6%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소란자의 위협수준에 비해 경찰의 대처 및 방어 장비 혹은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29> 음주소란자 폭행의 위협성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음주소란자의 물리적 폭행은 나의 신체에 위협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그렇지 않다	19	4.5
	그렇다	285	67.5
	아주 그렇다	115	27.3
	합계	422	100
음주소란자 진압을 위한 무기가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0.7
	그렇지 않다	87	20.7
	그렇다	261	62.0
	아주 그렇다	70	16.6
	합계	421	100
음주소란자의 물리적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그렇지 않다	26	6.2
	그렇다	312	73.9
	아주 그렇다	83	19.7
	합계	422	100

나. 음주소란자와의 충돌 원인

설문에 응답한 경찰관 중 실제로 언어적 위협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전체 응답자의 57.4%를 차지하였으며, 물리적 위협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7.8%이다. 언어적 위협의 사용 비율이 물리적 위협보다는 훨씬 많다. 이는 주취소

란경험자들이 적은 비율이지만 언어적 폭력을 물리적 폭력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보고한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 여겨진다.

<표30> 경찰의 언어적, 물리적 폭력 사용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주취자 상대 시 반말, 욕설 등 언어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7	8.8
	그렇지 않다	142	33.8
	그렇다	229	54.5
	아주 그렇다	12	2.9
합계		420	100
주취자 상대 시 폭행 등 물리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7	13.6
	그렇지 않다	203	48.6
	그렇다	148	35.4
	아주 그렇다	10	2.4
합계		418	100

하지만 이들 경찰의 경우, 거의 96%에 해당하는 경찰들이 음주소란자의 욕설과 폭행이 없으면, 본인들이 위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경찰의 위력 및 언어적 폭력행위가 공격적이기 보다 방어적 기제로 작동함을 보고하였다.

<표31> 음주소란자의 태도 및 경찰의 반응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	-----	-------	-------

음주소란자의 욕설이 없다면 나는 결코 욕설을 먼저 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그렇지 않다	17	4.1
	그렇다	209	50.7
	아주 그렇다	185	44.9
	합계	412	100
음주소란자의 물리적 폭행이 없다면 나는 결코 물리적 제재를 먼저 가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그렇지 않다	16	3.8
	그렇다	206	49.0
	아주 그렇다	197	46.9
	합계	420	100

다. 경찰의 위력 및 위협의 효과성

비록 필연적인 위력의 사용일지라도, 경찰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위협 및 위력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의 억압적 말투에 음주소란자의 행위가 대부분 누그러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략 25 % 이상이었다. 본인들의 물리적 행위에 음주소란자의 행위가 누그러진다는 의견을 보인 경찰은 약 30%에 지나지 않았다. 즉, 음주소란자의 경우 경찰의 위력이 사용되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해결되지 않고, 다스리기 어려운 상대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표32> 경찰의 위력 및 위협의 효과성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	-----	-------	-------

경찰의 억압적 말투에 음주소란자의 행위는 대부분 누그러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8	28.0
	그렇지 않다	241	57.2
	그렇다	53	12.6
	아주 그렇다	9	2.1
	합계	421	100
경찰의 물리적 행위에 음주소란자의 행위는 대부분 누그러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87	20.8
	그렇지 않다	210	50.1
	그렇다	110	26.3
	아주 그렇다	12	2.9
	합계	419	100

라. 강제력의 필연적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력과 위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들은 66.1%가, 경찰의 폭력적인 태도는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언어적 위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2.5%에 해당하였다.

<표33> 강제력의 필요성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	-----	-------	-------

음주소란자 및 경찰서 내 소란행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모습은 진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2.9
	그렇지 않다	130	31.0
	그렇다	219	52.3
	아주 그렇다	58	13.8
	합계	419	100
음주소란자 및 경찰서 내 소란행위에 대한 경찰의 언어적 위협은 진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2.6
	그렇지 않다	147	34.9
	그렇다	221	52.5
	아주 그렇다	42	10.0
	합계	421	100

마. 음주소란자 해결 방법

음주소란자 문제를 해결하는 관련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음주소란자 관련법이 있다면 경찰의 언어 위협 또는 폭력적 행위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무려 97.4%와 9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음주소란자 해결을 위한 관련법의 필요성 및 효과성

설문 내용	선택지	빈도(명)	비율(%)
-------	-----	-------	-------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법이 있다면 경찰의 폭력적인 언어사용은 줄어들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그렇지 않다	9	2.1
	그렇다	210	50.0
	아주 그렇다	199	47.4
	합계	420	100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법이 있다면 경찰의 폭력적 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0.5
	그렇지 않다	12	2.9
	그렇다	194	46.1
	아주 그렇다	213	50.6
	합계	421	100

제 4절 요약 및 결론

본 절에서는 음주소란자의 인권 침해 실태와 음주소란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인과 경찰관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음주소란행위를 경험한 사람들을 편의표집과 스노우볼 방식을 통해 표집하여, 당시의 경찰의 행동과 경찰서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회고식으로 질문항목을 통해 조사하였다. 응답에 응한 일반 주취경험자들의 경우 20대에서 70대까지 분포하였고 92.5%가 남성으로 여성 주취경험자에 비하여 남성주취자의 경험이 중점적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응한 일반인들의 경우 대부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정규직의 사람들이었다.

경찰집단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경찰관들의 97.9%가 남자 경찰관이었고,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분포하였다. 또한 이들의 근무지는 1급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도시의 지구대근무 경험자들이 다수 응답하였다. 또한 경찰응답자

의 제공이 경위 (88.4%)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일반인들의 경우 약 80%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잦은 음주가 생활화 되어있고, 약 5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1년 동안 음주 시 비교적 자주 만취상태가 될 정도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보아, 음주문화가 상당히 보편적이고 음주패턴이 만취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규제나 대응 방안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를 경험한 사람들의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보고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음주 및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관련 행위에 개인적인 관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음주 상태에서 경찰을 상대한 사람들의 보고를 살펴보면 물리적 위협보다는 언어적 위협을 경험한 사람이 2배가량 높으며, 5%~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경찰의 강제력이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수갑관련 강제력, 성적 불쾌감, 그리고 인권 모독과 관련된 수치심유발 행위를 경험한 것이 드러난다. 음주소란 및 음주상태에서 경찰을 상대한 사람들 중에 5~10% 정도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비율이지만, 이것이 전체 모집단으로 확산되어 조사될 경우 높은 수치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최근 3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은 절반 이상인 58.9%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반대로 40%이상이 최근 3년간 인권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인권 관련 교육 시간이 1회 혹은 1일로서 그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으나, 경찰서 내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는 수치로서, 음주소란자 대처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더욱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시민들 역시도 음주소란자가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소란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동시에 일반시민의 경우 이러한 음주소란자를 다스리기 위하여 음주소란관련 처벌, 벌금 등 현재 제도보다 더욱 강

려한 법적 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동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의 업무로 인식은 하되, 사회복지 기관이나 의료관련 기관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민은 음주소란자를 경찰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짙고, 경찰은 사회복지시설에 두는 경향이 있으나, 두 집단 공통적으로 법적제제를 통해 음주소란자를 규제하고 관용적인 음주문화를 개선하는데 의지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음주소란자를 대처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는 경찰의 경우, 이들이 느끼는 자존감의 상실 및 인권침해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공무집행에 있어 이들의 안전이나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보장 없이 시민들에 대한 인권과 안전만을 주장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 시민이 공권력을 존중하도록 만들고 경찰이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이 음주소란자 및 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 경찰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물리적 보호장비는 물론 명확한 경찰권 행사의 법적근거를 통해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상황이 요구하는 강제력에 대한 책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한 인권 교육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과 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일상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의 질적 보완하기 위한 현장참여관찰 및 경찰관, 일반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 현장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제1절 현장 참여관찰

1. 개요

현장 참여관찰은 부산 해운대 경찰서 관내 여름 경찰서와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지구대 및 경찰서 형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매년 여름철 주취자 문제로 언론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지구대들 역시 우리나라 경찰관서 중에서 주취자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진은 부산 해운대 경찰서를 선택하였다.

참여관찰은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차, 2차 참여관찰의 구체적 일정, 해당 경찰관서 및 참여관찰 방식은 아래와 같다.

<1차>

- 일시 : 7월 16일(금) 21시 ~ 17일(토) 02시 (총 5시간)

- 방법 : 2개 조로 나누어 면담 및 관찰 실시

[1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해운대 여름경찰서 관내 및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2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지구대 관내

<2차>

- 일시 : 7월 17일(토) 22시 ~ 18일(일) 02시 (총 4시간)

- 방법 : 2개 조로 나누어 면담 및 관찰 실시

[1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지구대 관내

[2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2. 대상 경찰관서 참여관찰 내용

가. 해운대 여름경찰서 개요

해운대 여름경찰서는 매년 7월 1일 ~ 8월 30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찰관서이다. 해운대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이 임시 서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근무 방식은 3개조로 3교 근무 방식 이루어져 있고 각 조에 직원 2명과 전·의경 2명이 배치된다. 7월 24일부터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각 조에 직원 2명씩 추가로 배치 된다. 참여관찰 당시에는 기동대 1개 중대가 상시 대기하며 정기적인 순찰을 담당하고 있었다. 같은 건물에 별도로 해양경찰, 119 수상안전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여름경찰서 내부는 직원 휴게실, 여름경찰서 서장실 등은 있으나 별도의 주취자나 민원인 보호공간은 없다. 경찰서 사무실내에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다. 파견된 경찰관들과 전·의경들은 정기적으로 해변가를 순찰하고, 지역청년회 등에서도 청소년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관찰 중 새벽 2시경 중년 남성 주취자 1인이 바다로 들어가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여 서치라이트를 켜고 해양경찰과 119 수상안전요원들이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한다. 구조 후 해양경찰과 119수상안전요원들이 수건으로 주취자의 몸을 감싸고 닦으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취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여 정신을 잃지 않게 유도한다. 여름경찰서 파견 경찰관들도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다. 경찰관들은 일행을 찾아 주취자를 인계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상황이 종료된다. 위험 상황 발생 후 주취자를 구조하고 일행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과 119수상안전요원, 파견 경찰관들의 대응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참여관찰 중 여름경찰서에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는 2명의 경찰관과 여름경찰서 근무에 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취자 관련 상황의 대처에 대하여 문의한 바 주취자들간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여름경찰서 지하에 파견 근무 중인 형사계 1개 팀이 담당하고 일반 주취자들을 입건해야 할 때는 해운대 경찰서로 인계한다. 그리고 형사사건과 연루되지 않은 단순 주취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대응이 없고 주취자가 진정할때까지 기다려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자진 귀가 시킨다. 그러나 주취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쉬게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없다.

여름 성수기에는 주취자들 간의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그런 경우 형사입건하여 처리하지만 단순 주취 소란자, 술취한 노숙자들은 진정시켜 귀가 조치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부산경찰청에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취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하여 질문한 바 한명은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다른 한명은 동 제도에 따라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을 뿐 본인의 경험으로는 술에 취했다고 응급실로 후송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인계하거나 술이 깰 때를 기다려 귀가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면담을 실시했던 두 명의 경찰관 모두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단순 주취자들의 경우 지구대나 경찰서 말고 일시적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인력을 갖춘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나. 해운대 경찰서 중동지구대

중동지구대는 해운대 주변 호텔, 콘도, 나이트, 클럽 등 대규모 다중운집시설과 술집, 카페, 식당 등이 밀집된 지역을 관할한다. 경찰관들은 4조 2교대(09:00-21:00, 21:00-익일 09:00)의 근무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한 조에 8~9명의 직원이 편성되어 있어 총 3대의 순찰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해운대 경찰서 관할 지구대 중 두 번째로 주취자 관련 업무량이 많은 지구대이다.

지구대 내부 소파에 쿠션이 설치되어 주취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별도의 민원인 보호 공간은 없다. 지구대 사무실내에 CCTV가 3대 설치되어 있다.



<지구대내 주취자 보호시설 및 CCTV>

참여관찰을 위해 지구대 순찰차량에 동승하여 경찰관들이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를 대응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였다. 주취자 음주소란 신고 후 대부분이 현장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찰차에 동승하여 현장에서의 주취자 대응 실태를 관찰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23:00 ~ 익일 02:00 유흥업소 밀집지역 순찰을 담당하는 ‘중하나’ 순찰차 근무자 2명과 동승하였다.

23:16경 해운대경찰서 112 신고센터로부터 해운대구 삼성콘도아파트에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무전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고자는 50세 정도의 여성으로 이전에 12년 동안 동거하던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길에 자신을 따라 집에 들어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 남성에게 퇴거불응시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며 집 밖으로 나오도록 설득하였다.

경찰관들의 설득에 밖으로 나온 주취자는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계속해서 신고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중 나이 많은 경찰관에게도 반말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나 경찰관은 당황하지 않고 “제가 선생님이 반말하신다고 같이 반말이나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주취자를 진정시키고 “ 두 분 사이에 해결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내일 술을 깬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며 20여 분간 주취자를 타일렀다. 그리고 한 번 더 신고자에 집에 들어가면 다시 신고가 들어오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였다.

그러자 주취자는 여전히 술기운은 있었으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깃듯이 인사를 하고 귀가하였다. 주취자가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23:43 경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1차 신고 상황이 종료되자 마자 23:54 경 중동지구대 관내 음식점에 술에 취한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곳은 성심병원 옆 ‘마포통 연탄구이’라는 음식점으로 테이블 6개 정도를 설치하고 음식과 술을 판매하고 있었다. 출동했을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이 9명 정도 있었고 빈 테이블에 50대 정도 된 남성 주취자가 앉아있었다. 주취자가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가게에 찾아오자 가게 주인은 주취자의 상태로 보아 값을 치르지 않거나 제대로 주문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문한 음식을 내어오지 않았고 이에 주취자가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자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게 주인과 주취자만의 다툼이었으나 시비가 계속되면서 주취자가 가게 주인과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로 대하자 업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주취자에게 연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취소란자를 빨리 데려가라고 재촉하였다.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남성 주취자는 여전히 술집 의자에 앉아 일어나지 않으려 하고 큰 소리를 내며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러자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장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였다. 이에 주취자는 반말과 욕설로 저항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설득에 마침내 술집에서 나와 도로에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였다.

두 명의 경찰관 중 한명이 담배를 권유하며 같이 담배를 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5-10분 정도 나누었고, 남성 주취자에게 “집이 어디냐? 원하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흥분이 가라앉은 남성은 “혼자 갈 수 있다”며 집으로 향하였다. 함께 대화를 하던 경찰관은 남성을 따라가 친구처럼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잠시 동행하였다. 출동했을 당시보다 많이 진정된 모습의 주취자를 귀가조치 하고 00:18 경 상황이 종료되었다.

동승했던 순찰차 근무자들과 현장에서의 주취자 대응과 관련여 질문을 하였다. 근무중인 경찰관들에 따르면 지구대 야간 근무의 대부분의 시간은 음주소란으로 신고된 주취 소란자를 달래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취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진정시켜 귀가 시키거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현장 상황에 대한 참여관찰 동안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자극 하지 않으려고 꼭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진정시키기 위해 흡연자에게 담배를 권유하거나 친구처럼 팔짱을 끼고,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현장출동 참여관찰 동안 모든 주취자들이 이런 경찰관들의 태도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지구대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중인 팀장과 면담을 하였다. 중동지구대는 파라다이스 호텔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대규모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술집들이 많이 있어 주말, 휴가철에는 주취자소란, 주취자들 간의 폭력행위 등으로 신고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 바쁠 때는 신고가 폭주하여 인근 좌동지구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팀장에게 부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취자 보호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가 있냐고 물었더니 ‘주취자 보호프로그램’은 상습 주취자,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지구대에서 문제가 되는 주취 소란자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주취자들은 거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중동지구대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의 활용에 관하여 물었더니 주취자를 경찰서 주취자안정실로 인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경찰서에 주취자안정실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문제라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한다. 만취상태의 주취자는 대부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계하고 있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19에 연락해서 ‘부산시립의료원’에 인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우도지구대는 해운대 주변에서 해운대여름경찰서를 기준으로 왼쪽편의 노상에 벌어지는 사람들과 해운대역 부근을 관할함한다. 해운대경찰서 관할 지구대 중 주취자 관련 업무량이 가장 많고 직원 수 또한 많은 지구대이다. 직원들은 4조 2교대(09:00-21:00, 21:00-익일 09:00)의 근무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한 조에 11명 내외의 직원이 편성되어 있고 총 4대의 순찰차량이 운용되고 있다. (당시 근무조의 경우 팀장 1명에 팀원 10명으로, 팀원은 경위 2, 경사 4, 경장 2, 순경 1로 구성되어 있었음.) 지구대 사무실내에 주취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실 공간은 없고, CCTV는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따로 마련된 보호구는 없고, 오토바이 헬멧을 보호 장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다고 한다. 지구대 내부 소파에 쿠션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취자 소란이나 자해행위 등에 대비해 쇠 등으로 된 것은 모두 떼어낸 상태였다.

23시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야간 근무중인 팀장에게 근무중 주취자 문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팀장은 경찰경력 30년의 베테랑이었고 연구진에게 진술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하였다. 베테랑 경찰관에 따르면 경찰이 맡고 있는 일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주취자 관련 업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인력 70~80%가 낭비되고 있다고 한탄한다. “살인범도 10~15일 추적해 들어가면 손을 들고 나오는데, 주취자 문제는 그런 것 없이 항상 반복되는 일이며 물리력 행사가 사실상 어렵

다”고 안타까워 한다.

문: 지금까지 주취자 문제에 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떠했나요?

답: 경찰로 일해 온 지난 30년 동안 위에서는 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관련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과 맞지도 않고 답이 없다. 항상 위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말할 뿐이지. 상습주취자 문제나 고질적인 인원 부족도 문제가 된다.

문: 주취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별도의 안전한 수용시설을 마련하거나, 심한 경우 진정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취자만큼은 그러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주취자 문제의 경우 구청단위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애초에 경찰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시설로 가면, 주취자나 경찰 서로에게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업근무자로서 느끼는 주취자문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더니, “며칠 전 자성대파출소에서 주취자문제로 경찰책임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경찰이 주취자를 데려오거나 발견하면 혈압 등을 체크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결국 경찰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되고 만다”고 최근의 사례를 들면서 주취자 보호과정에서의 경찰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은 일선 경찰관이 주취자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술에 만취해 깨지 않을 경우 119 구급차를 요청하여 전문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술을 깬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각 경찰서의 보호실로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서 형사계 당직에서는 책임 문제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고 지구대에서 처리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마지막 한 방법은 경미한 주취자의 경우 그저 알아서 술이 깨도록 놔두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달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취자 사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지구대 근무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여성 상습주취소란자가 있다며 말문을 꺼낸다. 그 여성은 조그만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 폭행 등을 해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다. 하루에 두 번이나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에 온 경우도 있고 한다. 결국 한 달에 스무 번 이상 주취 문제로 지구대에 오다보니, 결국 법정 구속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우동지구대 팀 전체에 1명 여성 경찰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출산으로 휴직 중이라 현재 근무중인 여성 경찰관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 조직에서는 TO로 잡고 있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라.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의 주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경찰서로서 형사과는 지역형사팀 6개, 강력범죄수사팀 4개, 마약수사팀 1개 와 형사 지원팀, 과학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서 전체 720명의 직원 중 91명이 형사과에 소속되어 있다. 1팀에 보통 7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09:00-익일09:00의 형태로 근무한다. 형사과 내에는 피의자 대기실이 별도의 공간에 마련 되어 있고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형사과내 피의자 대기실>

형사팀장의 말에 따르면 주취자 시비 문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발생하나 특히 여

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주취자 소란 문제는 형사팀보다는 지구대에서 주로 담당하게 된다. 형사과에서 취급하는 주취자 관련 문제는 단순 시비나 소란뿐만이 아니라 여행성 범죄나 성폭력 범죄와 결합되기도 하여 문제가 된다고 한다. 주취자 안정실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설치 당시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하도록 했었으나 인권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강제로 보호대상자들을 주취자 안정실에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면담을 하였던 형사팀장은 형사경력이 많은 경찰관이다. 그에 따르면, 형사업무와 관련하여 이전과는 달리 인권과 관련된 의식이 높아져서 경찰관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여성 주취자로 이와 같은 경우 형사과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직원(현재 8명)을 불러 처리를 돕도록 한다. 또한 주취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 형사과 내 보호시설 전면에 쿠션을 설치하였고 바닥과 벽 역시 스티로폼으로 막아 놓았다.

제2절 경찰관 심층인터뷰

1. 개요

경찰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경찰교육원 직무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 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부터 30년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37>면담 경찰관 연령 분포

연령대	인원수
20세 이상 30세 이하	0
31세 이상 40세 이하	3

41세 이상 50세 이하	27
51세 이상	20
총인원	50

<표38>면담 경찰관 경찰 총 근무경력 및 지구대·파출소 근무경력 분포

구분	경찰 총 근무경력	지구대·파출소 근무경력
5년 이하	0	28
6년 이상 10년 이하	4	8
11년 이상 15년 이하	0	5
16년 이상 20년 이하	20	3
21년 이상	26	6
총인원	50	50

면담은 대상자들에게 일반사항(성별, 연령, 지구대·파출소 근무경력, 현소속 등)에 대한 질문과 일선 경찰활동 중 주취자를 보호조치하거나 지구대·파출소에서 주취자를 대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당시 상황에서 주취자의 행동, 언행 그리고 응답자 본인의 대응, 처리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례를 최대한 구체화 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취자 보호관리에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현재 소속 기관에서의 주취자안정실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근무 중 주취자에 대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효과적인 주취

자 보호관리 방안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아래는 질문에 응답하였던 경찰관들의 면담의 주요 내용이다. 면담 내용은 인터뷰에 응했던 경찰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가 인식하는 경찰업무 중 주취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현장경찰관으로서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면담 주요 내용

가. 경찰업무 중 주취자 문제에 관한 일반적 인식

면담에 응했던 지구대·파출소 근무경력 25년의 한 경찰관은 “주취자는 럭비공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언제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주취자를 다룸에 있어서 항상 심적인 대비를 해야하며, 단순한 주취자의 경우는 구슬르거나 달래서 귀가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사건에 연루된 형사사건의 주취자의 경우 상대할 때 불의의 공격에 대비토록 주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감시해야 하고 말꼬리 잡히는 언행은 항시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험으로 체득한 주취자 대응법을 소개한다.

위 경찰관의 이야기는 일선 경찰관서에서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대응함에 있어 사안마다 얼마나 다양하고 민감한 경우가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면담을 했던 경찰관들의 대부분이 파출소·지구대 야간 근무중에 주취자를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말한다. 수치로 표현하면 40%에서 70% 정도라고 이야기 한다. 처리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가족 또는 지인에게 인계하는 것이 가장 많고 간혹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인사불성인 주취자는 119에 인계하여 응급구호를 받게 한다.

면담에 응했던 경찰관들은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서에 찾아와 자고 가겠다고 우기거나 귀가토록 권유함에도 계속 시비를 걸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주취자,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 운전기사가 주취자를 데리고 경찰관서로 찾아오는 경우 운전자와 승객

간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고 운전자와 주취자간의 시비로 번지는 경우, 택시에서 잠이든 주취자를 택시기사가 과출소나 지구대에 인계하는 경우 신원확인을 거부하거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경우, 여성 주취자가 있는데 남성 경찰관들만 근무 중인 경우 등 일선 근무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면담에 응했던 경찰관들 중 지구대·과출소 근무 중에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는 경찰관들은 모두 형사사건과 관련 된 주취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강제조치를 할 수 없는 단순 주취자들이었다. 이것은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현행범체 포라는 강제수사 수단을 활용하여 주취자에게 경찰장구를 사용한다든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대·과출소 경찰관들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마땅히 보호할 장소와 관리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구대·과출소 내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장시간 주취자를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위에서 나열된 어려움들의 근본 이유는 응급구호 대상이 아닌 단순주취자에 대한 강제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경찰서 형사과 근무 중인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지구대·과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기타 형사사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한 주취자의 경우 주취상태가 해소될 때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별도의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 놓는다든지 주취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사무실 의자에 대기시킨다든지 함으로써 또 다른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는 형사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주취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피의자를 보호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유치장의 경우 주취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유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흥분한 주취자를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한다. 이들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주취자안정실

제대로 운영된다면 사건처리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한다.

나.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면담을 통해 살펴본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현행 주취자안정실의 운영에 대해 회의적이고 현재는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의견이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 주취자 보호실태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지적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면담에 응했던 경찰관들은 모두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과 인력, 의료전문가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현행 주취자안정실 처럼 유명무실화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 조직의 특성상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관리부서(보통 경찰서 단위)에서 보호조치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현행처럼 일선 현장에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보호시설이어야 한다는게 대다수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운영 주체가 되어 소요 경비를 부담하고 경찰,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다기관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면담에 응했던 경찰관들 대부분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경찰청 내에서 그동안 주취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기관 운영체제 구축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입법적 대안에 관한 면담 경찰관들의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졌다. 하나는 주취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법 제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인권단체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단순주취자에 대한 강제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경찰관들은 2006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예를 들면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 주취자 보호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구호를 필요로 하는 주취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통해 주취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해야하고 주취소란자 등 공권력의 개입을 통한 제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효율적인 제지를 통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의견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주취자 보호조치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에 찬성하는 경찰관들은 지난 국회에서 주취자 관련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을 거론하면서 특별법안의 추진 보다는 현행 법령상의 주취자 보호조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실질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그 내용 중 주취소란자에 대한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입법적 대안에 관하여 면담에 응했던 경찰관들의 의견이 나누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두 견해 모두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두 공감하는 것이다.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령상 응급구호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일선 경찰관들이 보호조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주먹구구식의 대응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위의 내용외에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던 경찰관들의 의견이다. 아래 내용은 면담 경찰관들 중 극소수의 의견 또는 개인적 의견인바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 인권적인 제안은 제외하였다)

- 형사사법적 대안으로 상습주취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정기간 금주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개인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제언하는 경우도 있다.

- 법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 대안으로서 경찰서별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관들로 구성된 주취자처리반 혹은 경범죄처리반을 조직하여 주취자 발생부터 관계기관 연계까지 전담계 하도록 해야 한다.

- 주취자 처리방안을 현행 1366(여성의 전화)와 연계하여 각 시·군·구에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하면 운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각 병원 설립시 의무적으로 주취자 보호실을 설치하게 하여 보호하고 경찰, 소방기관이 협조토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절. 일반인 심층인터뷰

1. 개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는 직접 면담, 전화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시민단체 등에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주취상태에서 형사사건 또는 음주단속 등으로 경찰관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한 후 희망자에 한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방식에 있어서 가급적 직접 면담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대상자의 선택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면담은 총 50명을 실시하였다. 면담자 중 여성은 20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성들이다. 연령대 별로 구분하면 21세이상 30세 이하 14명, 31세 이상 40세 이하 9명, 41세 이상 50세 이하 7명, 51세 이상 60세 이하 2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로 20대, 30대가 많은 이유는 트위터,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20-30대 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39>심층인터뷰 일반인 연령 및 성별 분포

연령대	남	여	계
20세 이하	-	-	-
21세 이상 30세 이하	19	2	21
31세 이상 40세 이하	14	-	14
41세 이상 50세 이하	11	-	11
51세 이상 60세 이하	4	-	4
계	48	2	50

면담에 응했던 일반인들이 주취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한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 주취장, 운동장, 노상, 술집 등 신고출동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18건, 지구대·파출소에서 있었던 일이 24건,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 8건이다. 면담 내용을 사안별로 구분하면 단순시비 중 경찰이 출동한 경우가 28건, 소란 등으로 경찰관이 신고출동한 경우가 10건,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간 경우가 7건, 음주단속 중이던 경우가 5건, 지구대 경찰관이 병원으로 온 경우가 1건 이 있다.

2. 면담 주요 내용

(1) 일반인이 생각하는 경찰의 대응 태도

면담에 응했던 일반인들이 경찰의 대응 태도에 관하여 지적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경찰관들의 강압적 말투, 욕설, 무시하는 태도 등 경찰관들의 언행에 관한 것이다. 물론 면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불가능 하지만 면담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선 경찰관들의 주취자에 대한 대응태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은 면담자들이 진술한 경찰관들의 언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아래 내용은 인터뷰 도중 면담자가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 주취자 대응에 있어서의 말투: 고압적인 태도. 훈계조. 협박조. 반말. 빈정대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투. 조롱. 소리지르며 욕박지름. 캐묻듯이 물어보고는 함의 하라고 함.

사례: (진정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항의에) '나중에 내용이 틀리면 싸인을 안하면 된다, 조용히 있어'라고 하여 (불쾌한 마음에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고 하자) 'X발'이라고 하며 '거의 다 썼는데 무슨 취소냐, 취소는 없다'라고 소리 지름.

- 주취자인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말: 불필요하고 과도한 말. 비웃듯이 이야기. 입에 담지 못할 욕. 혼잣말.

사례: (주위 사람에게) '나서지 말고 드시던 술이나 드시라',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자)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너희들은 다 총으로 쏘 죽었을 거야', (메모지를 달라고 하자) '니 대갈통에 넣어가지고 가라'는 폭언과 모욕, (경찰차 안에서 여경이) 'XX년아 팬티가 다 보이잖아 왜 치마를 입고 술을 쳐 먹어'

- 지나친 물리력 사용: 강제로 순찰차에 탑승 시킴, 억지로 수갑을 채움, 머리채를 붙잡혀 지구대로 끌려들어가 다짜고짜 수갑을 채움

- 무시하는 태도: 시민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일을 처리하는 태도, 계속 말을 들어주지 않아 (왜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대꾸도 하지 않음, 주취자의 항의 무시.

(2)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면담에 응했던 일반인들은 현행 경찰의 주취자 보호체계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경찰관서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주취자들 중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주취자를 대하는 경찰관들의 언행에 있어서 거친 태도를 보이는 주취자에게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한다면 경찰관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아래 내용은 면담에 응했던 일반인들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현재 주취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주취자를 안전하게 인치할 장소가 마련되어야 함, 주취자가 편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계속 힘들게 앉아있으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임.
- 취해서 경찰에게 아무 이유없이 시비거는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하고,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에게는 과감한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음주 후 폭력은 상습범일 확률이 높으니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
- 스스로 반성할 기회 제공: 자신이 저지른 일을 CCTV로 시청하게 하고 DVD로 주어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 술이 취했다라도 근거법령을 들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먼저 고지한 후 제지를 한다면 주취상태라도 경찰관에 대한 반감이 조금이나마 수그러들 것임.
- 주취자들의 폭력에 같이 반응해서는 안 됨(경찰에 대한 처우개선도 물론 필요)
- 대리운전 회사와 경찰이 연계를 하여 주취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 사고도 범

죄도 줄어들 것임.

제4절 소결

현장 참여관찰, 근무 중 주취자를 상대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및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의 면담과 인터뷰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의 주취자 문제의 실상과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 실태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지구대 야간 근무의 상당 부분이 음주소란 주취자 처리에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과 언론 보도에서 간접적으로 알려지던 사실이 실제 순찰차 동행 순찰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심야시간대 도심지의 지구대의 신고출동은 많은 수가 주취자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여관찰 대상 지구대의 경우 신고출동 후 체포 또는 임의동행으로 지구대, 경찰서로 연행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고 주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진정시키고 달래서 귀가시키거나 가족 또는 친구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부드러운 언행을 사용하고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물리력을 자제하는 태도였다. 오히려 주취자들이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몸으로 미는 등 경찰관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취자 안정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찰서 야간 근무자가 현재 주취자 안정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구대 근무자들 또한 주취자 안정실에 보호조치 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야간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시설과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서에 주취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한 일반인들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주로 제기하는 경찰의 문제는 대부분 주취자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말투, 태도에 있다.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 욕설 등 주취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평상시 일반 민원인에게 할 수 없는 언행을 한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태도에 불만을 갖는 일반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경찰관들 또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립이 심화되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할 순 없지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의한 주취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습주취자 보호프로그램은 주취자의 대상이 알코올 중독자에 한정되므로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었다. 현장 경찰관들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미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취자들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경찰관서 또는 의료기관에의 보호조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장 경찰관들의 책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현장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주취자보호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주취자보호 관련 국제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알아본 후 외국의 주취자 보호 관련 입법례 및 관련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국가는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호주이다.

제5장 주취자 보호관련 국제적 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사례

제1절 주취자 보호 관련 국제법규

주취자 보호와 관련한 국제법적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1948년 12월 10일 제5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일반적인 기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UN의 산하기구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국제적 대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주취자 보호 관련 유럽인권협약의 관련 조항과 이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통해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문제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인권협약의 정식 명칭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협약은 1950년 11월 4일에 유럽지역 국가간 조직체인 유럽심의회(the Council of Europe) 21개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고, 1953년 9월 3일 효력을 발생했다.³⁸⁾ 동 협약 제5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38) 토마스 버겐탈/양건·김재원 옮김,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2001, 67-68면.

-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불량자의 합법적 구금
-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위 제5조 제1항 e는 알코올중독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관련 유럽인권법원의 2000년 4월 4일 “Affaire Witold Litwa c. Pologne” 판결이 있다.³⁹⁾

위 판결의 사건이 내용은 폴란드에서 1994년 5월 5일 정오경 1946년 생, 한쪽 눈이 실명이고 다른 한쪽 시력이 거의 없는 장애인 남성이 주거지 주변 우체국에 가서 자신의 사서함에서 우편물을 가지러 갔다가 사서함이 열려있고 우편물이 하나도 없어 우체국 직원에게 항의를 하자 우체국 직원은 이 장애인이 술에 취해서 거친 행동과 언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이 사람을 법령에 따라 주자안정실에 6시간 30분 동안 보호조치 한 사안이다.⁴⁰⁾ 유럽인권법원은 주취자안정실에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폴란드 정부에게 배상판결을 하였다. 동 판결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외에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39) CEDH(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ffaire Witold Litwa c. Pologne(Requête n°2662995), le 4 avril 2000,

40) 폴란드는 1982년 10월 26일 “젤제교육 및 알콜남용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코올중독자 및 주취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동 조항의 알코올중독자라는 용어는 통상 의학적으로 알코올에 의존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e의 알코올중독자의 개념은 전염병 감염자, 정신이상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 등과의 관계에서 그 개념을 고찰해야 한다고 한다. 나열된 사람들 사이에는 신체의 자유 제한과 관련 공통점이 있다. 즉, 진료 대상자 이거나 의료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서의 국가 사회정책 차원에서의 자유의 제한 인 것이다. 동 조항에 관하여 유럽인권법원은 이들의 보호조치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⁴¹⁾

또한 유럽인권법원은 위 판례에서 제5조 제1항 “e”의 “알코올중독자”라는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동 조항의 목적상 이것을 의학적 개념의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다. 그리고 “비록 의학적 개념의 알코올중독이라고 볼 수 없을 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대상자의 언행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에게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또는 대상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호조치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⁴²⁾

즉, 유럽인권법원은 알코올중독자가 아닌 주취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조치는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유럽인권협약은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들(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호주)의 주취자 보호 관련 입법례와 운영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제2절 영국의 주취자 관리 시스템

41) 2000년 4월 4일 유럽인권법원 “Affaire Witold Litwa c. Pologne” 판결 제60항.

42) 2000년 4월 4일 유럽인권법원 “Affaire Witold Litwa c. Pologne” 판결 제61항.

1.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영국 인권법(Human Rights Act) 제5조 ‘자유권 및 안전권(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에 따르면;

“제1항: 누구든지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아래 각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누구도 자유를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

(e) 전염성이 있는 질병 감염자,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자, 주취자(알코올중독자) 또는 행려자에 대한 합법적인 보호조치“

이 조항은 ‘보호적 구금’을 규정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구금 대상자 스스로의 이익(안전,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구금되어야 할 대상자들을 명기한 것이다. 이들을 구금하는 법적 근거는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이라고 할 수 있다.

<표40> 정신보건법상의 주취자 보호규정

제136조

- (1)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정신장애(mental disorder)로 인해 즉각적인 보호나 통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발견했을 경우,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대상자를 앞 135조에 정한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 보호조치할 수 있다.
- (2) 이 조항에 의해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 보호조치된 자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 등록된 자격있는 의사에 의한 검진과 허가받은 사회복지사와의 심층 면담을 거쳐 그의 치료 혹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35조에 정한 ‘안전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기관에서 제공한 주거
- 병원
- 경찰서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 기타 소유주 혹은 관리자가 흔쾌히 환자를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다른 적절한 장소

영국 인권법(Human Rights Act) 제5조 및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 제136조에 의한 주취자 혹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는 형사법에 근거한 ‘체포’ 혹은 ‘구금’과는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과 유럽인권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즉, ‘제재나 형사절차 준비’ 목적이 아니라 대상자의 ‘이익(보호)’이 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내용과 절차의 형식적인 이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이익(보호)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냐가 합법성의 기준이다⁴³⁾.

또한, 정신보건법의 시행령격인 ‘Code of Practice’에는 주취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자를 보호조치할 때 가급적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찰서 구금시설을 이용하라고 규정되어 있다⁴⁴⁾. 하지만, 독립 경찰 민원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IPCC)의 조사 결과, 경찰업무처리 편의 때문에 영국에서도 아직까지 일시 보호 대상인 주취자, 정신장애자들의 약 2/3에 해당하는 다수가 경찰서에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보건부에서 경찰서보다 의료시설을 주취자와 정신장애자 보호장소로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보호장소 정비 및 신설을 위해 새로 1억 3천만 파운드 (약 2천6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했

43) HM v Switzerland (2002) LTL 26 February

44) Department of Health. Code of Practice. Mental Health Act 1983.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08

45) Docking M, Grace K, Bucke B. Police Custody as a ‘Place of Safety’: Examining the Use of Section 136 of the Mental Health Act.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IPCC) Research and Statistics Series: Paper 11, 2008

다. 영국 왕립 정신과의사협회(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에서도 정신보건법 제136조의 적용에 대한 의료인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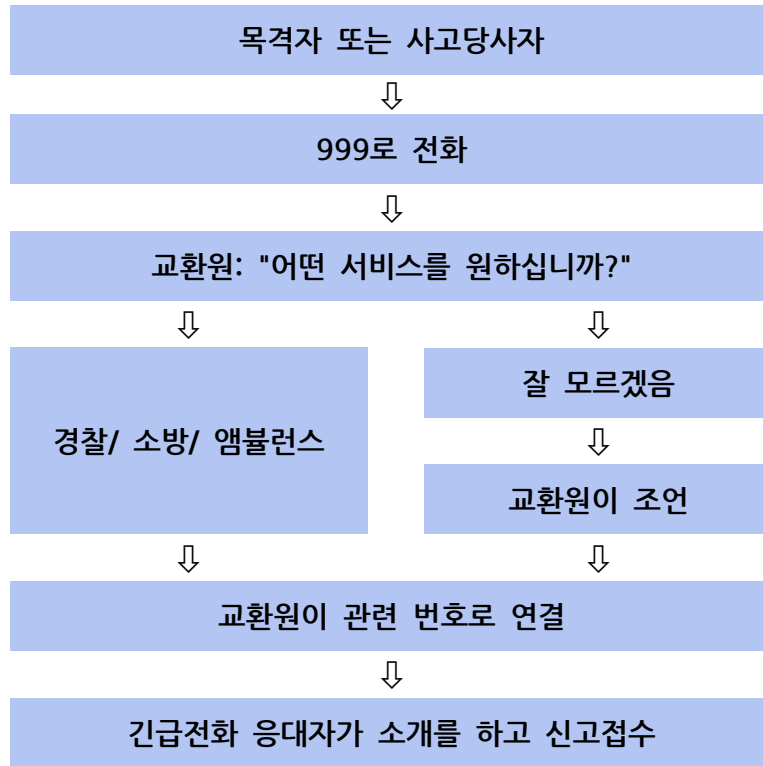
2. ‘단순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사례

영국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단순주취자의 경우,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NHS(National Health Service)소속의 응급구조대(Ambulance Service)에서 구호활동을 한다. 영국의 경우 긴급전화는 ‘999’로 통일되어 있어, 신고자가 999에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등 적절한 서비스기관으로 신고자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단순주취자 보호 관련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중복 출동하거나 업무담당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없다.

<그림1> 영국의 999 긴급전화 처리도⁴⁷⁾

46)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Standards on Use of Section 136 of the Mental Health Act 1983 (2007) (version for England).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Council Report 149, 2008

47) 이명원, 전계서, 82면.



런던의 경우, 응급구조대에 접수되는 주취자 관련 신고전화는 2008년 기준 연간 61,000건 이상에 달한다. 런던 응급구조대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는 주취자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취해소버스(booze bu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⁴⁸⁾

‘주취해소버스(booze bus)’는 런던 응급구조대가 런던 서부 지역의 주취자 신고 폭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으로, 보통의 앰블런스가 한번에 1~2명의 환자밖에 수용할 수 없어 주취자를 태우면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비해, 이 버스는 한번에 5명까지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주취해소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서, 병원까지 주취자를 이동할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다수의 주취자에게 적절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런던 응급구조대는, 주취해소버스와 별도로 크리스마스 시즌 등 주취자 발

48) http://www.londonambulance.nhs.uk/news/alcohol-related_calls.aspx(2010.09.08 검색)

생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시내에 '간이 주취자 보호센터'(treatment center)를 설치하여 병원까지 주취자를 이송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간이치료 센터는 런던 이외 도시에서도 축제기간 등 주취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여러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센터의 직원들은 무전기로 지역경찰, 민간경비원, 술집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호대상 주취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취해소버스'나 '간이 주취자 보호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소도시의 경우 주취자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는 응급구조차량과 응급구조대 직원이 유흥가에 고정 배치되어 근무를 한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열리는 경찰주관 회의에 참석하며, 현장에서는 경찰, 업소경비원 등과 무선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취자 관련 안전사고 혹은 구호를 요하는 주취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병원까지 후송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3. 주취자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경찰관은, '주류허가법(Licensing Act 1872)' 제12조에 정한 주취상태에서의 난동 및 무질서 행위와 '주류허가법(Licensing Act 1902)' 제1조에 정한 '주취로 인한 무능력 상태' 및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1967) 제91조 1항에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주취 무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체포 대상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내무부장관이 정한 알코올중독자 치료시설로 데려갈 수 있고, 이 치료시설에 보호조치되는 기간은 '법적인 구금'으로 인정한다.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1967) 제91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행위(Drunkenness in a public place)는 형법상 '무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으며 약식재판을 통해 1천 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관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주를 금지시킬 수 있고, 음주자가 소지한 알코올을 압수할 수 있다. 형사사법과 경찰법(Criminal Justice & Police Act 2001), 12조에 의거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이나 보조경찰관의 음주금지 지시

에 따르지 않거나 알코올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5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관은 면허법(Licensing Act 2003 제155조)에 의거, 소란을 일으키고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이 소지한 술병의 경우 개봉된 것뿐만 아니라 개봉되지 않은 것이라도 압수할 수 있다.⁴⁹⁾

제3절 일본의 주취자 관련 입법례와 운영사례

일본의 경우에도 음주를 즐기는 사회적 풍습이 일반화되어 있는 편이다. 직장회식이나 친교모임, 대학생들의 단합모임 등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중음식점에서도 생맥주를 비롯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음주문화의 보편화는 곧 주취자가 일상에서 상존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반면 일본에서는 음주를 강권하거나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음하는 문화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에 ‘주취자의 인권’ 문제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의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

일본에서의 주취자에 관한 관련법규와 실무운영상황 등을 바탕으로 보면,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은 대별하여 주취자에 대한 보호적 측면과 주취자에 대한 규제·처벌적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주체인 주취자 인권실태와 관련해서 보자면, 전자는 당해 주취자의 인권보호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후자는 주취자로 인해 야기되는 일반인에 대한 침해의 방지라는 점과 아울러 주취자에 대한 규제·처벌을 통한 재범의 방지로 장래적으로 주취자 자신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와의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49) Home Office, A Practical Guide for Dealing with Alcohol Related Problems: WHAT YOU NEED TO KNOW (COI on behalf of the Home Office, february 2008). p. 14.

여기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사례로서 일본의 주취자 인권보호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일본의 주취자보호 관련법제의 전체적인 체계와 일본 경찰의 실무상 주취자에 대한 관리의 방식과 절차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일본의 경우, 만취자(滿醉者, 일본어로는 ‘泥醉者(니취자)’라 함)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경찰권 행사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울러 만취에 이르지 않은 주취자(일본어로는 ‘酩酊者(명정자)’라 함)에 대한 보호조치는 특별법인 ‘술에 취해 공중에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명정자규제법’이라 함)에 규정해두고 있다.

(1) 만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 경찰관직무집행법

동법 제3조에서는 경찰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이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만취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우선 경찰서, 병원, 정신병자수용시설, 구호시설 등의 적당한 장소에 당해인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경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자의 가족, 지인 기타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자의 인수처에 관하여 필요한 수배(手配)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책임 있는 가족, 지인 등이 발견되지 않는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건을 적당한 공중보건 또는 공공복지를 위한 기관 또는 이러한 유형의 자의 조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다른 공공의 기관에 그 사건을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재판소⁵⁰⁾(簡易裁判所, 당해 보호를 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를 말한다.)의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간이재판소 판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허가장을 발부하며, 이 때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관이 허가장을 청구할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호조치 대상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 이유, 보호 및 신병인도의 일시 및 신병인도처를 매주 간이재판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표41>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① 경찰관은 이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우선 경찰서, 병원, 정신병자수용시설, 구호시설 등의 적당한 장소에 당해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1. 정신착란 또는 만취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2.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본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자의 가족, 지인 기타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자의 인수처에 관하여 필요한 수배(手配)를 하여야 한다. 책임 있는 가족, 지인 등이 발견되지 않는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건을 적당한 공중보건 또는 공공복지를 위한 기관 또는 이러한 유형의 자의 조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다른 공공의 기관에 그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

50) 일본의 경우, 법원[재판소] 조직은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 가정재판소의 5가지 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간이재판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지역말단형 법원조직이다.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시·군법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의 간이재판소는 통상의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어 그 재판관할의 범위가 우리나라 시·군법원보다는 훨씬 넓다는 특성이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의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을 승인하는 간이재판소(당해 보호를 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관의 허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 단서의 허가장은 경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관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부하는 것으로 하며, 그 연장에 관한 기간은 통산하여 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허가장에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에서 보호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 이유, 보호 및 인도의 일시 그리고 인도처를 매주 간이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예방 및 제지(제5조), 위해의 예방 등을 위한 출입(제6조) 등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나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경찰권 조항이 될 수 있다.

(2) 만취에 이르지 않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 명정자규제법

일본의 명정자규제법 제3조는 명정자에 대한 보호의 요건, 장소,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일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보호조치 대상인 만취자(일본어, 泥酔者)가 아닌 ‘술에 취해 있는 자(명정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의 요건과 본법의 보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건은 ①명정자이어야 하며, ②공공의 자오 또는 승물에서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⁵¹⁾을 하고 있을 것, ③ 언동, 술 취한 정도

51) 참고로 본법 제4조는 ‘현저하게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 제3조는 ‘현저하게’라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본인을 위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명정자이면 모두 본법상의 보호조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②③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한 보호는 일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하여’ 행하는 보호에 한정되며, 또한 본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경우에만 인정 된다⁵²⁾.

이 때 보호의 장소는 ‘구호시설, 경찰서 등의 보호하기에 적당한 장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호시설’이란 경찰서의 조직에 속하지 않는 보호소(경찰본부[주, 우리나라의 지방경찰청에 해당] 조직에 속하는 시설임)를 의미하며, ‘경찰서 등’의 ‘등’에는 경찰서의 하부조직인 교번(交番, 우리나라의 ‘파출소’에 상응)이나 주재소(駐在所, 우리나라의 ‘지서’에 상응) 등이 해당된다.⁵³⁾

보호의 기간은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술을 깨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이다. 따라서 피보호자가 술을 깬 경우에는 즉시 보호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법에 의한 보호의 경우는 오로지 주취자(명정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만취자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달리 기간연장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정자규제법에 의해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일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간이재판소에의 통지절차와 동일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운영에 대하여 만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52) 본법의 입안과정(전술한 要綱試案)에서는 공중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더라도 경찰관서 등에 일시 수용하는 소위 사회 방위적 의미에 있어서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결국 입법화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小堀旭, 酒に酔っ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關する法律の概要, 警察研究 第32卷 第7号, 1961., 32~32면.

53) 小堀旭, 전계논문, 33면.

한편, 명정자규제법에서는 경찰관이 주취자가 알코올의 만성중독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라고 인정한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7조).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주취자에 대한 또 다른 보호조치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⁵⁴⁾ 한편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진료를 권유할 수 있고(제8조), 주취자가 최저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자일 경우에는 일본의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부조를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제9조).⁵⁵⁾

(3) 명정자규제법의 입법배경

명정자규제법은 일본의 제38회 통상국회에서 성립되었으며, 1961년 6월 1일 법률 제103호로서 공포되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의 제정은 소위 의원입법에 의한 것이며, 주로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의 여성의원들의 주도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당시 동법 제정 이전에 이미 일본사회는 명정자의 거칠고 난폭한 행위의 만연, 술이 초래한 심각한 가정비극의 속출,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행되는 범죄의 급증 등의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여론도 그 필요성을 점차 인정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었다⁵⁶⁾.

이러한 일본 자국내의 분위기 속에서 양원의 여성의원들로 하여금 명정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만든 것은 1958년 6월 15일 동경에서 발생한 부의 만성적인 주취소란에 시달려오던 16세와 13세의 자매가 친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54) 西原春生, 酒に酔っ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爲防止法, ジュリスト 第231号, 有斐閣, 1961.8, 11면.

55) 위 명정자규제법의 입법연혁, 주요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주취소란자 처리에 관한 비교법연구-일본의 명정자규제법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4년 7월호, 수사연구사, 2004 참조.

56) 小堀旭, 酒に酔っ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爲の防止等に關する法律の概要, 警察研究 第32卷 第7号, 1961, 28면.

동 사건 이후 여성의원간담회(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의 여성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초당파적인 간담회)는 명정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1960년 3월에 ‘酩酊者の規制에關한特別法案要綱試案’을 작성하였다. 같은해 4월 이 要綱試案을 중심으로 ‘술취한자에 의한危害等の防止에關한法律案(酔っぱらいによる危害等の防止に關する法律案)’을 입안하였다⁵⁷⁾. 일본 제34회 통상국회에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당시 안보조약개정문제를 둘러싼 국회내외의 갈등상황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여성의원간담회는 1961년 1월부터 관계부처인 경찰청, 후생성, 법무성의 의견을 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특히 법률안과 가장 관계가 깊은 행정기관인 경찰청의 입안에 관한 측면지원을 얻어 ‘술에 취해 공중에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성안하였다⁵⁸⁾. 동법안은 1961년 4월 초순 여당 및 야당의 기본적인 동의를 득한 후, 동년 4월 12일 총 24명의 참의원(參議員)—그 중 13명이 여성의원—에 의해 참의원(參議院)에 발의되었다. 즉일 참의원 지방행정위원회에 부하여 졌으며, 동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고 부대결의⁵⁹⁾를 붙여 가결된

57) 위 要綱試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長谷川善博, 酒に酔っ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爲の防止に關する法律—その立案から制定まで—, 法律時報 第33卷 第7号, 1961.7, 70면 참조.

58) 이 법률안은 명정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위 要綱試案에 대한 각계의 반대론에 영향받아 규제책이 대폭 축소된 모습을 띠게 되었다. 당초 要綱試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명정상태 있어서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유죄로 한다. 명정상태에서 죄를 범한 음주의 습벽이 있는 자를 교정처분에 부하는 것은 형법의 개정예 의하도록 하며, 우선 위와 같은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一) 울림퓌를 맞이함에 있어 공공의 장소 및 승물(乘物) 내에서 명정자를 일소(一掃)함과 동시에 명정에 의한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①공공의 장소 및 승물 내에서 명정상태에 있는 자를 호호실에 수용하며, 하룻밤 보호할 것, ②명정하여 공공의 장소 또는 승물에서 타인에게 귀찮게 하거나 기타 거칠고 난폭한 행위를 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 (二) 명정하여 가족에게 난폭한 행위를 종종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 또는 민생위원의 신고에 의하여 호호실에 수용하며, 24시간 보호할 것, (三) (一) 및 (二)에 해당하는 자가 의사의 진료에 의해 알코올중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치료시킨다. 그 경우, 생활곤궁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의 취급을 할 것.

59) 동법은 개인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참의원과 중의원의 의결시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법의 남용, 인권의 침해 등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야한다는 취지의 부대결의가

후 참의원과 중의원의 본회의를 거쳐 1961년 6월 1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표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명정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구호를 요하는 명정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알코올이 만성중독자의 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과도한 음주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여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다.

2.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법규

일본의 경우,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면, 우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일본형법 제95조)를 구성하며, 주취소란자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폭행죄(제204조), 상해죄(제208조), 협박죄(제222조), 주거침입죄(제130조), 업무방해죄(제233조 및 제234조), 손괴죄(제257조 내지 261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표42>일본 명정자 규제법 제3, 6, 7, 8, 9조

<p>일본 명정자규제법 제3조 (보호) ① 경찰관은 명정자가 도로, 공원, 역, 흥행장, 음식점 기타 공공의 장소 또는 기차, 전자, 승합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 공공의 승물(乘物)(이하 「공공의 장소 또는 승물」 이라 한다.)에서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당해 명정자의 언동, 그 취한 정도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본인을 위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선 구호시설, 경찰서 등의 보호하기에 적당한 장소에 당해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명정자의 친족, 지인 기타 관계자(이하 「친족 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자의 인취(引取)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는 책임 있는 친족 등의 인취(引取)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술을 깨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이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 이유,</p>
--

행해졌다. 한편 동법 제10조는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 및 인도의 일시 및 인도장소를 매주 당해 보호를 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 경찰관은 명정자가 그 자의 주거 내에서 동거하는 친족 등에게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당해 친족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반의 상황으로 판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소화23년[1948년] 법률 제136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주거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경찰관은 제3조 제1항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정자를 보호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명정자가 알코올의 만성중독자(정신장애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라고 인정한 때에는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 등) 전조의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통보에 관한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건소장은 당해 통보에 관계하는 자의 치료 또는 보건지도에 적당한 다른 의료기관을 소개할 수 있다.

제9조 전조 진단의 규정에 의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유받은 자가 그 권유에 따라 받은 진료 및 진찰의 결과 필요하다고 진단된 치료에 관하여는 당해 진료를 받은 자가 빈곤 때문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되지 않는 자인 때에는 생활보호법 제15조에 규정한 의료부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형법상의 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 중 위 명정자규제법(酩酊者規制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가 있다. 즉 주취자(명정자)가 공공의 장소 또는 승물(乘物)에서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현저하게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한 때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동법 제4조), 또한 이러한 언동에 대한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이 공중에게 현저한 폐를 끼친 주취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으

로 처벌할 수 있다(제5조).

한편, 위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형사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며,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절차법에 의한 즉심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취자가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3. 일본 경찰의 주취자 보호 실무 처리절차

일본경찰청이 경찰실무에서의 주취자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보호취급요강(保護取扱要綱)’이 있다. 이 요강은 1960년 3월에 제정하여 전국 지방경찰에게 하달된 것으로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의 실무지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요강은 국가경찰인 일본경찰청이 보호조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각 지방경찰인 전국 47개의 도도부현경찰(都道府縣警察)에 있어서는 이 요강에 준하여 각각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이 요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와 명정자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호조치 및 아동복지법(1947년 제정, 법률 제164호)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한 아동상담소장의 위탁에 의한 아동의 일시보호 등을 적절하게 행하기 위해 경찰실무에서의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성격의 것이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의사항

이 요강에서는 보호를 요하는 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직접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정확하게 행해져야 하지만, 종래 만취자에 대하여는 다소 손쉬운 방법을 택해온 경향이 없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약 보호를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인의 생명, 신체 등의 보호를 위해 성의를 가지고 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각급 경찰관서별로 ‘보호주임자’를 두도록 하되 경부(경감) 이상의 자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수사과장이 이에 해당하지만 수사지휘업무를 고려하여 방법계장 등에게 처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장을 보호주임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간부파출소의 장을 보호주임자로 지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부파출소의 장에게 보호주임자의 책무를 수행시킬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2) 보호의 초동조치와 보고

보호를 요하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나 관련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외근경찰관은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단 파출소로의 동행 및 주변인들로부터의 사정과약, 가족 등의 수배 및 통보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와 같이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모두 보호주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를 받은 보호주임자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 질병의 상황, 주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되, 주취자(명정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 내에 있는 ‘보호실(保護室)’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취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그 밖의 의료시설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호대상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등 피보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호자의 가족 등을 확인하고 보호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피보호자에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주임자의 지휘를 받아 피보호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이나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한 조치

보호를 하는 동안 경찰관은 피보호자가 자살, 화재 그 밖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취자가 폭행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보호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주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취자가 보호실을 이탈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피보호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피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시 상부에 이를 보고하고, 가족 등에게도 곧바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4) 보호실

보호실은 각 경찰서별로 설치하며, 그 규모는 각 지역의 보호대상자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주임자는 보호실에 수감된 피보호자의 수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리에 필요한 적정인원의 경찰관을 지정하여 보호에 임하도록 한다.

보호실의 구조나 설비 등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유치장과는 별도로 설치할 것, 1실의 면적은 대략 7.5㎡ 이상으로 할 것, 도로 그 밖의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할 것, 통풍·환기·채광 등에 유의할 것, 문·창 그 밖의 설비는 피보호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호실에는 피보호자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의약품을 상비해야 한다.

한편, 경찰서장은 피보호자가 다른 피보호자와 동실하기 힘든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보호실 이외의 숙직실, 휴게실, 사무실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경우 특히 주취자의 경우에는 보호실을 대용하여 경찰서 유치장에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유치장근무자는 피보호자의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경찰서에 설치된 보호실이 아닌 상급기관인 각 도도부현경찰의 경찰본부(동경도의 경찰명칭은 경시청)에 보호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실의 설치기준으로는 당해 시가지에서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할 것, 학교·주택가 등의 정숙한 환경이 요구되는 장소를 피할 것, 주취자나 정신착란자 등의 각각의 피보호자들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서로 볼 수 없는 시설로 할 것, 1실의 면적은 5㎡ 정도로 하되 1인 1실로 할 것, 주취자보호실은 소음 및 사고의 방지에 대비하는 구조로 하고 다다미 바닥과 정숙한 환경이 되도록 할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5) 보호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치

24시간 이상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명정자규제법에 따라 간이재판소 판사에게 허가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때 청구는 보호주임자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행해야 한다.

아울러 간이재판소에의 통지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행하되 매주 금요일까지 그 직전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이에 보호사건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4. 주취자보호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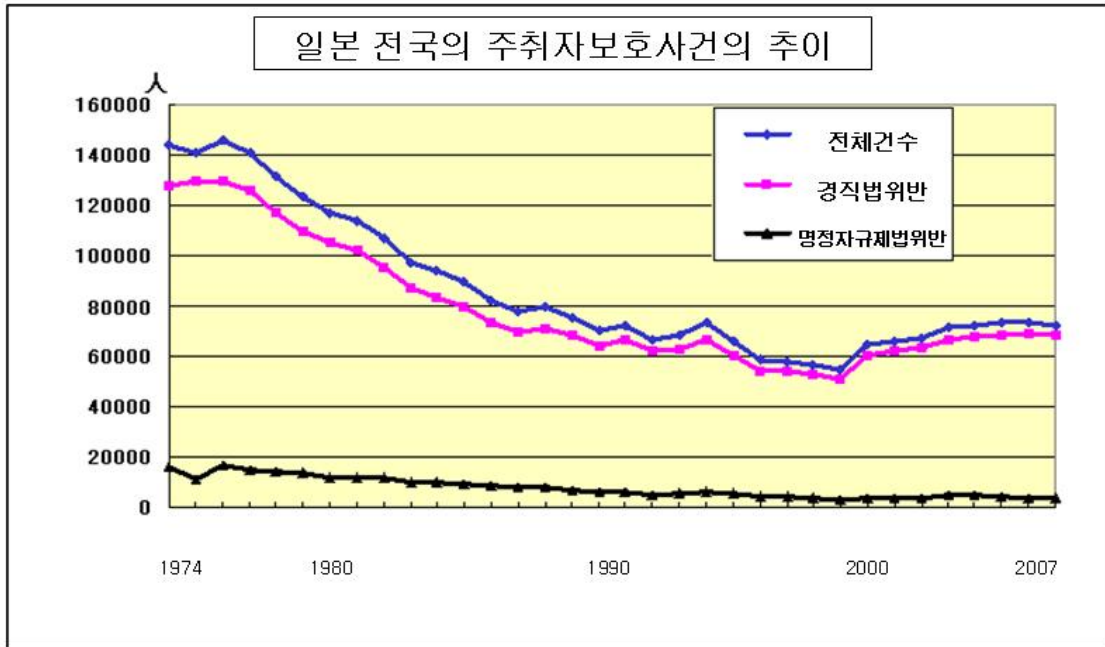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로는 일본경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경찰백서’에서 전체 보호취급사건에 관한 통계가 있다. <표43>은 이에 관한 최근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간의 통계이며,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 통계에서는 주취자 보호뿐만 아니라 정신착란자, 미아, 가출인, 보호소년 등의 전체 보호사건에 관한 통계만이 확인 가능하다.

<표43> 일본의 전체 보호취급사건의 추이 (2005~2009년도)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보호인원 합계	209,410	212,416	215,624	220,895	217,285
이 중 지역경찰관에 의한 보호	172,936	177,159	179,013	181,132	178,124
구성비 (%)	82.6	83.4	83.0	82.0	82.0

아래 그림은 일본 전국의 주취자보호사건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도표이다. 1974년부터 2007년까지의 30여 년간 일본 전국에서 발생한 주취자 보호사건의 피보호자 인원수의 변동추이를 표시한 도표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만취자에 대한 보호건수와 명정자규제법에 근거한 주취자에 대한 보호건수의 변동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개괄적으로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약 15,000건에 육박했던 주취자 보호건수가 점차 감소하여 80년대 중반 이후 10,000건 이하로 떨어졌고, 90년대 후반에 6,000건 이하를 최하점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 약간 상승하여 연간 7,000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림2> 일본 전국의 주취자보호사건의 추이



위 통계와 별도로 일본 수도권 동경도(東京都)를 관할하는 자치경찰인 경시청의 경우에는 자체통계의 하나로서 아래 <표44>와 같이 명정자규제법위반 사범의 송치 건수를 제공하고 있다. 명정자규제법에서는 제4조에서 공공장소 등에서의 난폭한 언동 등을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서는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는 주취자를 1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과 상주인구와 유사한 동경도에서 명정자규제법으로 처벌된 인원이 2009년도에 153건이었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44> 일본 동경(경시청)의 명정자규제범위반 송치현황 (2009년도)

합계						구속송치				서류송치			
총계		제4조		제5조		제4조		제5조		제4조		제5조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53	151	141	138	12	13	5	2	4	6	136	136	8	7

주) 명정자규제법 제4조 ① 명정자가 공공의 장소 또는 승물에 있어서 공중에 게 폐를 끼치는 현저하게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한 때에는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의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 및 과료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한다. 동법 제5조 ① 경찰관은 전조 제1항의 죄를 현재 범하고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의 언동을 제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은 자가 그 제지에 따르지 않고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중에 게 현저한 폐를 끼친 때에는 1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경도 경시청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건수를 만취자와 주취자(명정자)로 구분하여 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아래 <표3>가 그것이다.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본 수도인 동경도의 경우 지난해 2009년도의 주취자로서 경찰에 보호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10,625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만취자가 8,932명, 만취에 이르지 않은 주취자가 1,693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8,917명, 여자가 1,708명이다.

<표45> 일본 동경도(경시청)의 주취자 보호사건의 처리상황 (2009년도)

구분	합계	만취자	명정자
합계	10,625	8,932	1,693

성별	남	8,917	7,430	1,487
	여	1,708	1,502	206
거주지	동경도내 거주자	8,285	6,983	1,302
	타 지역	1,807	1,509	1,302
	거주불상자	583	440	93
발견 단서	경찰관 발견	1,498	1,136	362
	112신고	5,451	4,529	992
	가족 등의 신고	34	26	8
	기타	3,642	3,241	401
발견 장소	옥내	2,391	1,856	535
	옥외	7,819	6,709	1,110
	교통기관내	415	367	48
보호의 개시시각	0~4시 사이	3,723	2,161	562
	4~12시 사이	2,039	1,676	363
	12~20시 사이	1,875	1,554	321
	20~0시 사이	2,988	2,541	447

보호 장소	경찰서	보호실	5,692	4,504	1,188
		보호실 이외	3,762	3,322	440
		교번/주재소	830	773	57
	경찰서 이외	341	333	8	
보호 시간	1시간 이내	2,809	2,585	224	
	4시간 이내	3,325	2,725	600	
	8시간 이내	3,360	2,714	646	
	12시간 이내	916	742	174	
	16시간 이내	189	148	41	
	24시간 이내	26	18	8	
	24시간 초과	-	-	-	

주취자가 발견된 단서별로 보면, 112신고(주, 일본은 110)에 의한 것이 5,451명으로 전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경찰관의 직접 발견한 것이 1,498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주취자를 발견한 장소별로는 옥외가 7,819명, 옥내가 2,391명, 교통기관 내가 415명이다.

보호의 개시시각을 보면, 자정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가 3,7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저녁 8시부터 자정 0시까지로 2,988명,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2,039명의 순이다. 보호의 장소로는 경찰서 단위의 시설에 보호된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호실이 5,692명, 보호실 이외가 3,762명, 교번·주재소가 830명이다. 보호의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3,3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시간부터 4시간 이내로 3,325명, 1시간 이내가 2,809명의

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이재판소 판사의 허가를 받아 24시간을 초과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통계상 동경도경찰의 경우 24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프랑스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1. 프랑스 주취자관련 입법례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1873년 1월 23일 법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3년 법령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정 질서벌 형태로 규제되던 것이 1873년 1월 23일 법령(일명, Roussel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최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 후, 1955년 2월 8일 법령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에 관한 규정은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Code des débits de boissons et des mesures contre l'alcoolisme)」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법령을 통해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상의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공중위생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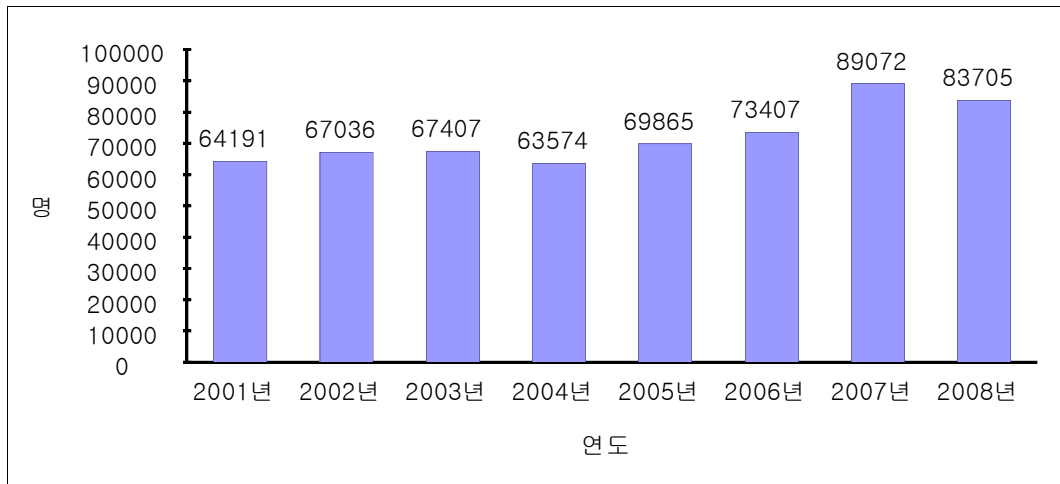
프랑스 공중위생법 제3341-1조는⁶⁰⁾ “경찰은 도로, 길, 광장, 카페, 유흥장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주취상태로 있는 자를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보호실에 구인하여 이성을 회복할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이때, 처리 비용은 주취자 본인의 부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53-1조는⁶¹⁾ “법 제3341-1조에 규정된 장소에서 명백한 주취상태로 있는 자는 2급 위경죄에⁶²⁾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60) Art. L334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Une personne trouvée en état d'ivresse dans les rues, chemins, places, cafés, cabarets ou autres lieux publics, est, par mesure de police, conduite à ses frais au poste le plus voisin ou dans une chambre de sûreté, pour y être retenue jusqu'à ce qu'elle ait recouvré la raison.》

61) Art. R3353-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e fait de se trouver en état d'ivresse manifeste dans les lieux mentionnés à l'article L. 3341-1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2e classe.》

있다.

<그림3>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로 처벌된 연도별 횟수



출처: OFDT 통계자료(http://www.ofdt.fr/BDD_len/seristat/00035.shtml)

위 <그림>의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는 군경찰(Gendarmerie nationale), 국가경찰 생활안전국(Service de sécurité publique), 파리경시청(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행위(IPM: Ivresse publique et manifeste) 단속실적을 나타낸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연평균 72,282명의 주취자가 공중위생법에 의해 처벌되었고 이는 20세에서 70세 사이의 프랑스 국민 1000명 당 2.2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공중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경찰관이 주취행위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주취상태의 명백성과 공공장소라는 이중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는 법에 예시된 도로, 길, 광장 등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와 누구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62) 프랑스에서 2급 위경죄(Contravention)는 최대 150유로(한화 약 22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Art. 131-3 du Code pénal

있는 곳(학교, 교회, 콘서트 장, 극장,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주취상태의 명백성’에 대한 프랑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의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주취상태란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며 오감에 의해 누구나 확인 가능 한 외형적 사실’을 말한다.⁶³⁾ 즉, 경찰관이 주취상태를 이유로 보호조치하기 위해서는 주취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주취상태가 외형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 공중위생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주취자는 주취상태로 인해 잠재적으로 타인 또는 자신에 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고, 공공 질서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취자를 적발하는데 있어서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처럼 알코올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취상태의 적발은 외형적 사실에 입각한 경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외형적 사실은 통상 주취상태와 관련이 있는 외부의 징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강한 술 냄새, 일관적이지 않은 답변, 감정이나 화술의 기복, 균형 감각의 상실 등을 말한다. 실제로 프랑스 군경찰(Gendarmerie)이 사용하는 통고처분의 양식에는 구체적인 외부 징표들을 체크할 수 있는 난이 있다(아래 통고처분 양식 참조).

<그림4> 군경찰 주취자 통고처분서 체크 리스트

63) Cass. crim. 12 mars 1875 et 24 avril 1990 bull. crim. 1990 n°152.

DATE - LIEUX - CIRCONSTANCES DES FAITS - CONSTATATIONS

Commis le jj/mm/aaaa à .. heures ..

Cet état d'ivresse publique et manifeste se concrétise par :

<p>1°) Son attitude</p> <input type="checkbox"/> Il est maître de soi <input type="checkbox"/> Il est énervé <input type="checkbox"/> Il est arrogant <input type="checkbox"/> Il est agressif	<p>2°) Son regard</p> <input type="checkbox"/> Il est normal <input type="checkbox"/> Il est anormal <input type="checkbox"/> Ses yeux sont voilés <input type="checkbox"/> Ses yeux sont brillants
<p>3°) Son odeur de l'haleine</p> <input type="checkbox"/> Elle sent l'alcool <input type="checkbox"/> Elle est indéterminée	<p>4°) Son élocution</p> <input type="checkbox"/> Elle est normale <input type="checkbox"/> Elle est pâteuse <input type="checkbox"/> Elle est bégayante <input type="checkbox"/> La personne ne parle pas
<p>5°) Ses explications sont</p> <input type="checkbox"/> Nettes <input type="checkbox"/> Embrouillées <input type="checkbox"/> Incohérentes <input type="checkbox"/> Répétitives <input type="checkbox"/> La personne ne parle pas	<p>6°) Son équilibre</p> <input type="checkbox"/> La personne tient debout <input type="checkbox"/> La personne titube

출처: Rapport d'évaluation de la procédure d'ivresse publique et manifeste, février 2008, 113면.

위 그림에 나타난 균경찰의 통고처분 양식을 보면, 경찰관이 처분 대상자의 외형적 상태에 대하여 체크 하는 항목들이 있다. 체크 리스트는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번 항목은 주취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고 세부 사항은 “스스로를 통제한다”, “신경질적 이다”, “거만한 태도다”, “공격적 이다”로 구성된다. 2)번 항목은 주취자의 시선에 대한 내용이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시선이 흐리멍텅하다”, “광채가 난다”로 구성된다. 3)번 항목은 호흡시의 냄새에 대한 질문이고 “호흡시 알코올 냄새가 난다”, “판별되지 않는다”로 구분된다. 4)번 항목은 주취자의 말투에 대한 체크 사항이며 “정상적”, “간결하지 못하고 늘어지는 말투”, “더듬는 말투”, “말하지 않음”로 구분된다. 5)번 항목은 주취자의 답변내용에 대한 판단 사항이고 5가지(“명확함”, “불명확함”, “일관적이지 않음”, “반복적임”, “말을 하지 않음”) 언어태도가 나열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6)번 항목은 주취자의 균형감각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서있는다”, “비틀거린다”로 구분된다. 단속 경찰관은 단속시 외형적 사실을 기초로 6가지 항목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2. 프랑스 경찰의 주취자 보호 절차

프랑스에서 경찰관이 공중위생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취자를 발견하면 주취자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취자를 강제 보호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로부터 대상자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확인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보호조치 대상자의 의료검진에 관한 사항은 1973년 7월 16일 보건부령이⁶⁴⁾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1975년 10월 9일 보건부령에⁶⁵⁾ 의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1973년 보건부령에 의해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실에 유치하기 전 의사의 검진 후 확인서(Certificat de non admission à l'hôpital)⁶⁶⁾를 발부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동 보건부령은 정확한 검진을 위해 주취상태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충분한 시간동안 검진할 것과 치료가 시급한 만성 약물중독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보건부령에 첨부된 확인서 양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5> 보호조치 대상 주취자에 대한 의사 검진서 양식

64) Circulaire du ministère de la Santé du 16 juillet 1973

65) Circulaire du ministère de la Santé du 9 octobre 1975

66) 확인서의 정확한 번역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대상이 아님”이라는 뜻이지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확인서”로 지칭하기로 한다.

(1) Es-Adptaux rurus.
DEPARTEMENT
 de

CENTRE HOSPITALIER
 de

**SERVICE DES ADMISSIONS MEDICALES
 ET DES URGENCES**

**Application des circulaires du 16 juillet 1973 et du 9 octobre 1975
 relatives aux admissions des sujets en état d'ivresse, dans les services hospitaliers.**

Je soussigné

certifie avoir examiné, ce jour, à heures

M.

Mme

âgé (e) de

demeurant

présenté (e) par :

- les fonctionnaires du commissariat de Police de⁽¹⁾
- les militaires de la brigade de Gendarmerie de⁽¹⁾

et présumé(e) par eux comme étant en état d'ivresse ;

l'intéressé(e) a été ⁽¹⁾ {

- admis(e) en service hospitalier.
- non admis(e) et remis(e) aussitôt aux dits fonctionnaires.
- a refusé l'hospitalisation.

A, le
 (signature)

출처: Rapport d'évaluation de la procédure d'ivresse publique et manifeste, février 2008, 109면.

위 확인서 양식을 보면, 의사는 대상자가 의료시설에 들어온 시간을 기재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동행한 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검진 후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시설에서 치료 받을 필요가 없어서 경찰공무원에게 바로 인계하는 경우”, “대상자가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인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은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의 BNA(bulletin de “non hospitalisation”)와 BNH(bulletin de “non admission”)의 형태가 있다. BNH 양식에서는 마지막 검진 후 의사가 표시해야 할 사항에서 “검진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환자를 경찰관에게 인계한다”, “인계하지 않는다”, “환자가 검진을 거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은 의사가 대상자를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하는 경우에만 주취자보호실에 유치할 수 가 있다. 그러나 1973년과 1975년 보건부령에 의한 주취자의 보호조치전 의료검진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파리, 리용, 마르세유 등 의료기반이 충분히 확충된 도시지역은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으나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경찰관들이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응급의료진⁶⁷⁾ 활용하거나 유치장 입감 전 검진담당 의사, 법의관, 개인병원 의사 등이 검진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만일, 주취자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소방 또는 응급의료기관(SAMU)으로 하여금 의사의 검진을 받게 할 수도 있다.

3. 프랑스 주취자보호실(Cellule de dégrisement) 운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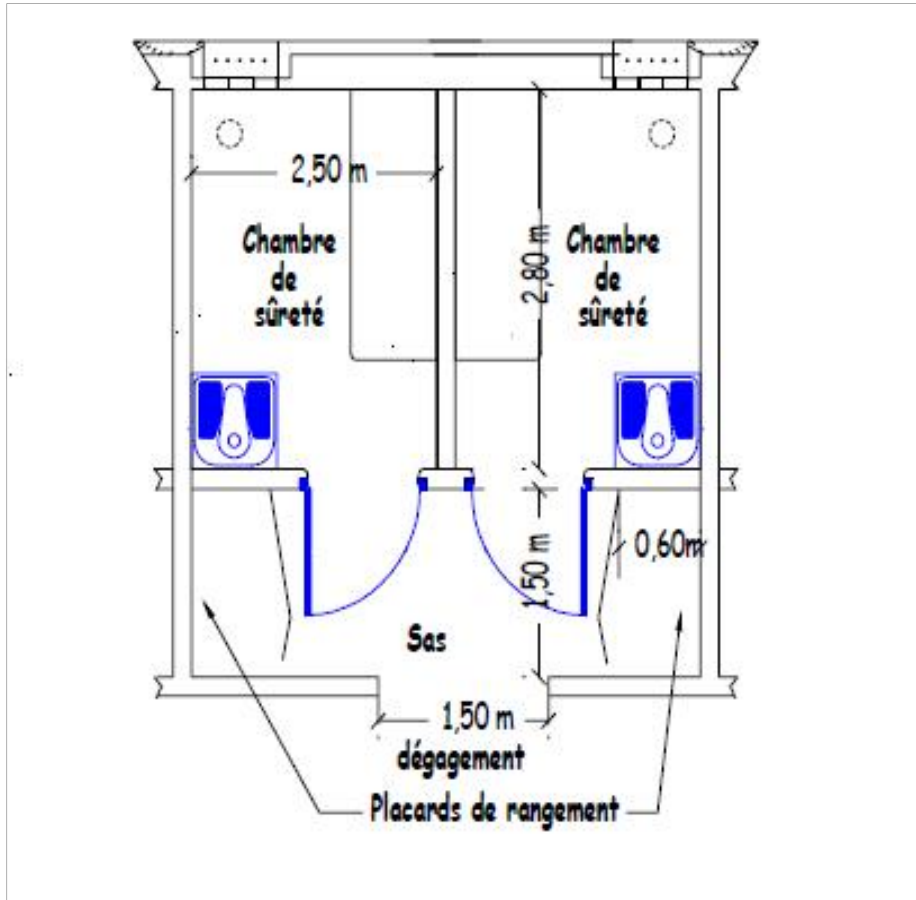
주취자의 상태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받은 경찰관은 주취자를 주취자보호실에 유치한다. 주취자의 보호기간은 일정한 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취자가 완전히 술에서 깨어나 경찰관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주취자보호실에서의 보호기간은 보호 대상자마다 달라질 수 있고, 경찰관이 보호해제의 시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

주취자보호실 현황은 국가경찰의 경우 전국에 1,17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군경찰의 경우 7,079개의 개인별 보호실이 설치되어 있다.⁶⁸⁾

<그림6> 프랑스 주취자보호실 표준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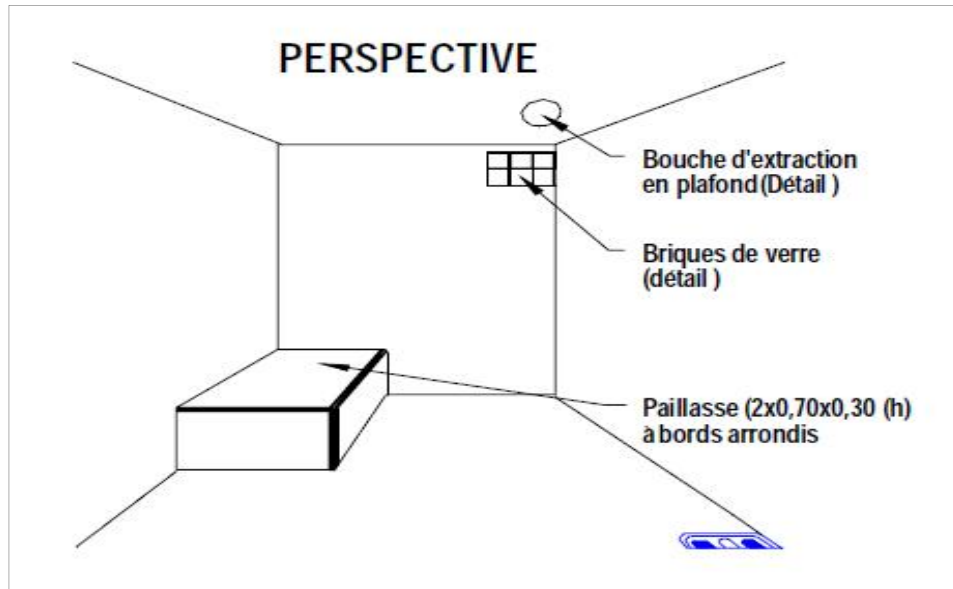
67) SOS médecin, SAMU

68) Rapport d'évaluation de la procédure d'ivresse publique et manifeste, février 2008, 3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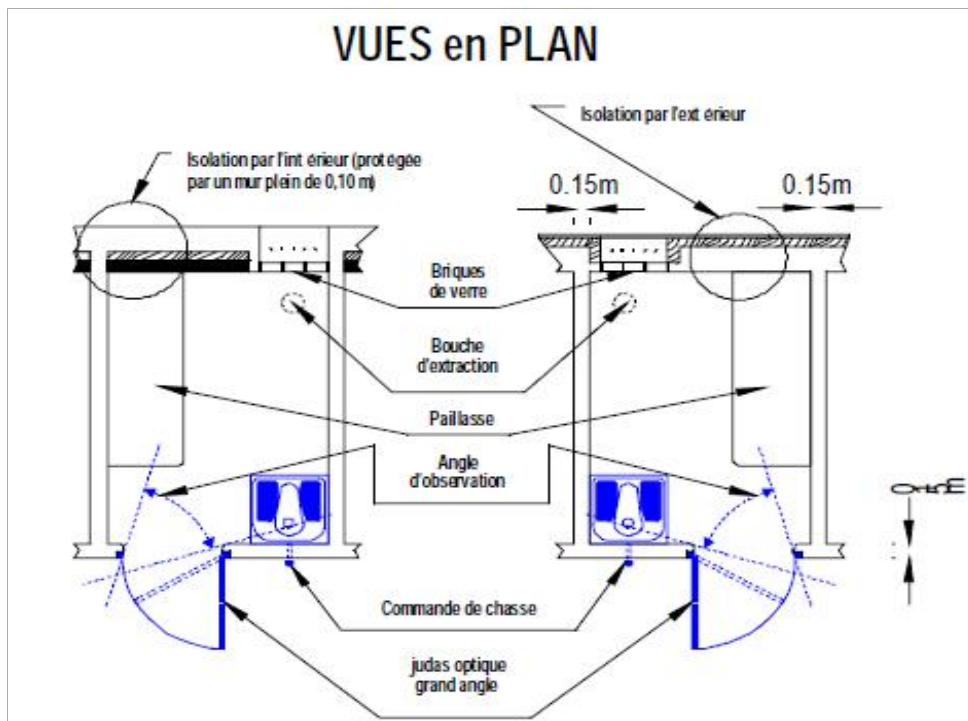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경찰관서에 설치하는 주취자보호실의 표준안이다. 내부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간이침대, 변기와 창이 설치된 구조로 되어 있다. 아래 <그림> 주취자 보호실 표준안(3)을 보면 출입문을 통해 보호실 안쪽이 모든 각도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담당 경찰관이 외부에서 주취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프랑스 주취자보호실 표준안(2)-내부구조



<그림8> 프랑스 주취자보호실 표준안(3)-투영도



제5절 기타 국가(미국, 호주, 독일)의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1. 미국의 입법례와 주취자 보호실 운영 사례

미국의 경우 각 주(州)별 입법례가 다양하여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입법례를 소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영미법계인 영국의 법전통을 이어받아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및 주취상태를 「형법」(경범죄)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처리는 보건의료 차원에서 접근하여 비범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류 통제 법규와⁶⁹⁾ 알코올중독자 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주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에는 「알코올, 주취자, 약물중독자 처리법」(Treatment for Alcoholism, Intoxication, and Drug Addiction, Chapter 70.96ARCW)이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은 알코올이나 주취자(intoxicated persons)들에게 음주로 인한 형사 처벌이 아닌, 이보다는 생산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기금(fund) 내에서 중독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⁷⁰⁾ 그 외 일리노이 주에서도 「알코리즘과 다른 약물중독 및 의존법」(Alcoholism and Other Drug Abuse and Dependency Act, 20 ILCS 301) 등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주류소지 및 음주행위, 혈중알콜농도 0.08% 또는 0.1%이상의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통상 C급 경범죄로 체포하여 최고 500~1,000달러 이하로 처벌(버지니아, 테사스주, 뉴욕시, 워싱턴D.C, 시카고시 등 대부분의 주형법 및 시조례 등)된다. 이러한 주취자는 주(州)별 대상 및 벌칙의 유형이 다르나, 버지니아 등 형사처벌을 하는 주(州)는 경범죄로 처벌하고 기타 주(州)는 주취상태 해소시까지 유치 후 훈방을 한다. 시단위의 사례로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찰업무규정에 의하면 1차

69)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류관리법(Virginia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s), 캘리포니아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등이 있다

70) [http://apps.leg.wa.gov/rcw\(2010.09.25검색\)](http://apps.leg.wa.gov/rcw(2010.09.25검색))

적발시 주취해소후 훈방, 2·3차 적발시 통고처분 및 주취해소시 석방, 4차 적발시 즉결법정에 기소가 되며 25~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로스앤젤레스시 경찰국의 경우 주취자가 경찰에 대항하여 경찰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체포·구속처리를 원칙으로 한다.⁷¹⁾

주취자에 대한 보호의 주체는 경찰관과 응급구조팀이며, 보호대상은 주취자 또는 주취상태로 보이는 요부조자이다.⁷²⁾ 단순주취자는 본인의 동의 하에 경찰관서나 공공치료시설, 주취자의 자택으로 후송하고 있다. 그러나 만취자는 경찰에 의해 48시간 이내의 유치 및 응급치료를 위한 공공치료시설에 후송 후에 치료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⁷³⁾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응급치료를 위한 긴급감호(2일이나긴급감호 적절성 여부검토후 결정)를 하고 배우자, 후견인, 친인척, 인증의사, 병원장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호처분(강제입원)도 가능하다.

또한 경찰관 등은 경찰서내에서 난동을 부릴경우 가죽끈(워싱턴D.C) 또는 수갑(L.A.) 등 일반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미시건 등 일부 주에서는 피의자의 주취로 인한 난동·자해를 제지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된 의자에 수갑, 족쇄기능의 결박장치를 부착한 ‘스트레인트 체어(Straint Chai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주취자 보호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의식과 분별력이 있는 단순 주취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또는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로 후송한다. 그러나 귀가조치에 거부하는 경우 체포해서 주취해소센터로 후송한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만취자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주취해소센터로 후송한다. 주취자는 경찰서 유치장, 주취해소센터(Detoxication - LA시, 워싱턴D.C.)에서 최대 48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으며 워싱턴 D.C의 경우 보호조건 해제 후에는

71) 백창현, “공권력 확립을 위한 주취자 관리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8, 13-14면.

72) 통합알코올중독 및 주취치료법 제12조

73) 한정갑,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질서개념 및 경찰관련 법규의 검토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24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자해를 하거나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주취자는 종합 정신응급프로그램(CPEP: 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으로 관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주취자에 대해 24시간 동안 응급정신과 서비스와 모바일긴급위기 서비스, 장기보호관찰소를 제공하는 제도 이다.⁷⁴⁾

2. 호주의 주취자 보호 체계: 「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

호주에서는 초기 주취자에 대하여 형사적 접근을 하였으나, 1979년 이후, 캔버라 등 여러 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주취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비범죄화하고 별도의 「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Intoxicated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4)」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를 다시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주취로 인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법법(Summary Offences Act 1988-NSW)으로 처벌한다.⁷⁵⁾

호주에서 주취자의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다. 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주취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나 물질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 외부의 위해로부터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주취자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하게 된다.²⁰⁾

경찰관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 주취자를 경찰서 유치장, 공공치료시설, 공인보호시설, 주취해소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최대 8시간 또는 10시간(승낙시) 이내, 공인보호시설에서는 최대 15시간 또는 18시간까지 보호할 수 있다. 「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에서는 공인보호시설(licensed place)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취자가 공인된 보호자(carer)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벌칙규정을 보면, 주취자가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보호대상자에서 제

74) <http://dmh.dc.gov>(2009.09.25검색)

75) <http://www.legislation.act.gov.au>(2010.09.25검색)

외되며 일반형사범으로 처리된다.⁷⁶⁾

또한 경범죄법에 의하면 소란자 등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주취자 처리 관련 선의의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⁷⁷⁾

3. 독일의 주취자 보호 체계: 「통일경찰법모범초안」

독일은 주취자 처리에 대한 특별법이 없고 경찰법의 일반조항에 의해 주취자를 처리한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자, 만취자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공공 의료기관에서 보호조치하며 단순 주취자는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보호시설 구금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는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이때 경찰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배제 혹은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알코올중독자, 만취자로 응급구호가 필요한자를 치료시설 및 구호시설에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구금할 수 있다. 난동피의자를 제지할 수 있는 족쇄가 갖추어진 침대가 구비된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는 요건 소멸시 또는 최대 48시간 이내까지 할 수 있다.⁷⁸⁾

경찰관은 구금된 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하려는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제3자를 공격하거나 그에 저항하거나 혹은 물건을 손상시킬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⁷⁹⁾ 질서위반법에는 공공이나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거나 기타 소란을 피울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입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6) 하혜영·유규영,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54, 2009. 25면.

77) 백창현, 앞의 글, 15면.

78) 통일경찰법모범초안 16조 제2호

79) 통일경찰법모범초안 40조

제6절 외국 입법례 및 운영사례의 시사점

외국의 경우 일본의 ‘명정자규제법’ 또는 호주의 ‘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처럼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취자 보호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경찰작용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알코올중독자 또는 만취자의 경우 응급구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경찰은 초기 대응의 주체로서 응급구호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구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주취소란자에 관하여는 일본의 입법례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명정자규제법’은 만취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 요건, 장소, 기간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경찰관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일선 경찰관서의 현장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제고 하고 있다.

한편, 주취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경찰관서의 ‘주취해소실’에 주취자를 보호하기전 의무적으로 보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는 것이 적정한가의 여부를 응급구호기관의 의사로부터 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에 대한 통고처분에 있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과거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 중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우리나라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영국의 단순주취자에 대한 NHS(National Health Service)소속의 응급구조대(Ambulance Service)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런던 응급구조대의 ‘주취해소버스’와 ‘간이 주취자 보호센터’의 운영에서 경찰 이외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주취자 문제에 대한 대처를 볼 수 있었고, 미국 워싱턴 D.C의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 운영, 종합정신응급프로그램(CPEP:

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 사례는 보건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으로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정리

(1) 연구의 배경

우리 사회에는 주취자가 야기하는 무전취식, 음주소란, 기물파손 등 가벼운 범법 혹은 무질서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과 주취자 개인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문제가 양립하고 있다. 즉, 주취자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보호라는 이중적 문제인 것이다. 특히, 그동안 주취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찰에 의한 ‘통제’에만 전념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건강상 위험이 있으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주취자의 의학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격무에 지친 경찰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비인간적인 처우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라도 주취자 처리 문제는 가장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경찰지구대 야간 업무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고, 이성을 잃은 주취자의 난폭한 언행으로 인해 경찰력의 낭비와 경찰관 사기 저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호소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 경찰의 주취자 대응 실태와 제반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사회적 대처의 미비로 인한 주취자 인권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및 프로그램 등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주취자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논문, 공공기관의 보고서, 업무 매뉴얼, 언론 보도, 백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외국 법령, 외국 경찰기관의 보고서 등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취자 보호 및 경찰의 주취소란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자

료를 조사 분석하였고, 주취자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 휴가철 부산 해운대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편의표집과 스노우볼 (snowball) 표집방식으로 선정된 경찰관 50명과 음주소란행위를 경험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경찰관 50명과 주취 경험이 있는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3) 주요 발견 사항

가. 주취자 보호 법제도의 미비

현행 주취자 보호에 관한 기본 법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가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취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아닌’ 초동조치를 하는 일선 경찰관에게 맡겨져 있고 그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관이 주취자를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하다가 주취자가 사망한 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취상태로 인한 요보호자의 판단 기준의 추상성과 경찰관들의 비전문적 판단은 때론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구호 요청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현행법은 경찰이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후 감독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의 사정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관내에 적당한 구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가 곤란하다. 그리고 외상이 없는 단순 만취자인 경우 119 구급대에서 출동을 거부하거나 출동하더라도 의료기관 호송시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주취자 또는 가족이 확인되나 인수를 거부하는 주취자의 경우 추후 진료비 청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는 지구대나 주취자안정실에서 일정 시간 보호하게 되는데 이 때 주취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구만으로는 피보호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주취소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골절상,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주취자 보호 체계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문제점, 입법상의 불명확성 그리고 실효성 없는 제도의 운영, 보호조치를 위한 장구·장비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들은 주취자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인식 - ‘언어적 폭력’ 문제와 ‘인권 교육의 부재’

음주소란자의 인권 침해 실태와 음주소란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인 500명과 경찰관 500명을 편의표집과 스노우볼 방식을 통해 표집하여, 당시의 경찰의 행동과 경찰서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회고식으로 질문항목을 통해 조사했다.

설문에 응답한 일반인들의 경우 약 80%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잦은 음주가 생활화 되어있고, 약 5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1년 동안 음주 시 비교적 자주 만취상태가 될 정도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보아, 음주문화가 상당히 보편적이고 음주패턴이 만취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규제나 대응 방안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를 경험한 사람들의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보고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음주 및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관련 행위에 개인적인 관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음주 상태에서 경찰을 상대한 사람들의 보고를 살펴보면 물리적 위협보다는 언어적 위협을 경험한 사람이 2배가량 높으며, 5%~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경찰의 강제력이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수갑관련 강제력, 성적 불쾌감, 그리고 인권 모독과 관련된 수치심유발 행위를 경험한 것이 드러난다. 음주소란 및 음주상태에서 경찰을 상대한 사람들 중에 5~10% 정도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비율이지만, 이것이 전체 모집단으로 확산되어 조사될 경우 높은 수치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최근 3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8.9%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반대로 40% 이상이 최근 3년간 인권 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찰관도 그 시간이 1회 혹은 1일로서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서 내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음주소란자 대처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더욱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시민들은 음주소란자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의 업무로 인식은 하되, 사회복지 기관이나 의료관련 기관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민은 음주소란자를 경찰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짙고, 경찰은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으로 보는 등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현장 참여관찰에서 발견된 문제점 - ‘법적 근거의 미비’와 ‘주취자 보호시설 부재’

일선 지구대 현장에서 확인한 주취자 문제는 대부분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강제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 주취자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가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행범체포라는 강제수사 수단을 활용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다든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마땅히

보호할 장소와 관리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구대·파출소 내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장시간 주취자를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였다.

한편, 경찰서 형사과 근무 중인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지구대·파출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기타 형사사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한 주취자의 경우 주취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별도의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 놓는다든지 주취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사무실 의자에 대기시킨다든지 함으로써 또 다른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는 형사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조사계에서도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주취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피의자를 보호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유치장의 경우 주취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유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흥분한 주취자를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주취자안정실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사건처리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주취자안정실은 법적 근거의 미비와 전문시설과 인력 및 장비 부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인해 운영 되지 않고 있어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별도의 예산과 인력, 의료전문가의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현행 주취자안정실처럼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조직의 특성상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관리부서(보통 경찰서 단위)에서 보호조치를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 경찰관 심층면담 조사 - ‘지자체 중심 다기관 협력체’ 및 ‘법적 근거’ 필요

심층면담 조사에 응한 경찰관들 중 대다수가 ‘주취자 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기관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보호시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운영 주체가 되어 소요 경비를 부담하고 경찰,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다기관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입법적 대안에 관한 면담 경찰관들의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졌다. 하나는 주취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법 제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인권단체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단순주취자에 대한 강제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주취경험자 심층 면접 - ‘인권침해적 언행’ 문제의 원인은 ‘제도적 미비’

면담에 응했던 일반인들이 경찰의 대응 태도에 관하여 지적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경찰관들의 강압적 말투, 욕설, 지나친 물리력 사용 및 무시하는 태도 등 경찰관들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행 경찰의 주취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은,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경찰관서에 없고, ‘주취자들 중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어’ 이들에게서 피해를 입거나 분노를 느낀 경찰관들이 다른 주취자들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인격을 모독한다는 것이다.

바. 외국 사례의 시사점 - 법과 제도를 통한 주취자 보호

일본의 경우, 일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보호조치 대상인 만취자(일본어, 泥醉者)가 아닌 ‘술에 취해 있는 자(명정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명정자규제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일본 경찰이 주취자를 발견하면, 보호시설 등에 24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응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알콜

중독자라고 판단될 경우,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제7조),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진료를 권유할 수 있고(제8조), 주취자가 최저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자일 경우에는 일본의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부조를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제9조). 특히, 경찰관서 내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정해 “시가지에서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할 것, 학교·주택가 등의 정숙한 환경이 요구되는 장소를 피할 것, 주취자나 정신착란자 등의 각각의 피보호자들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서로 볼 수 없는 시설로 할 것, 1실의 면적은 5㎡ 정도로 하되 1인 1실로 할 것, 주취자보호실은 소음 및 사고의 방지에 대비하는 구조로 하고 다다미 바닥과 정숙한 환경이 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관이 공중위생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취자를 발견하면 주취자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취자를 강제 보호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로부터 대상자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확인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보건부령은 정확한 검진을 위해 주취상태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충분한 시간동안 검진할 것과 치료가 시급한 만성 약물중독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경찰관은 의사가 대상자를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하는 경우에만 주취자보호실에 유치할 수 가 있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실은 그 규격과 기준이 엄격하게 정혀져 있다.

미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한 보호의 주체는 경찰관과 응급구조팀이며, 보호대상은 주취자 또는 주취상태로 보이는 요부조자이다. 단순주취자는 본인의 동의 하에 경찰관서나 공공치료시설, 주취자의 자택으로 후송하고 있다. 그러나 만취자는 경찰에 의해 48시간 이내의 유치 및 응급치료를 위한 공공치료시설에 후송 후에 치료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응급치료를 위한 긴급감호(2일이나긴급감호 적절성 여부검토후 결정)를 하고 배우자, 후견인, 친인척, 인증의사, 병원장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호처분(강제입원)도 가능하다.

호주에서 주취자의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다. 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비정

상적인 행위를 하는 주취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하나 물질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 외부의 위해로부터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주취자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하게 된다. 경찰관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 주취자를 경찰서 유치장, 공공치료시설, 공인보호시설, 주취해소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최대 8시간 또는 10시간(승낙시) 이내, 공인보호시설에서는 최대 15시간 또는 18시간까지 보호할 수 있다. ‘주취자 관리 및 보호법’에서는 공인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취자가 공인된 보호자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벌칙규정을 보면, 주취자가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일반형사범으로 처리된다.

독일은 주취자 처리에 대한 특별법이 없고 경찰법의 일반조항에 의해 주취자를 처리한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자, 만취자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공공 의료기관에서 보호조치하며 단순 주취자는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보호시설 구급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는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이때 경찰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2. 개선방안 및 정책적 대안

(1) 주취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주취자 보호 방안 마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 설문조사 및 현장 참여관찰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일선 경찰관들은 단순 주취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명정자규제법과 같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주취자의 보호 기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에서는 요보호 주취자의 개념, 주취자 발견 시 의료인의 검진 우선 실시, 요보호 주취자에 대한 의료/보건 시설 보호조치, 요보호 주취자 보호 및 치료 재원

마련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주취자 보호시설 마련, 요보호 주취자가 아닌 주취자의 경찰관서 보호조치, 경찰관서 주취자 보호시설의 기준, 주취자 보호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및 상습 주취소란자에 대한 치료명령제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의 주취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현행관련법의 개정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별법 제정에 관한 반대여론과 거부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한쪽으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고 다른 쪽으론 공중위생 및 보건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취자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의료인의 검진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검진 결과 건강상 위험이나 우려가 발견될 경우 의료기관에 보호조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 보호실에 보호조치하는 방안이다.

현행 주취자 중 응급환자인 경우 초동조치를 취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응급기관에 후송한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 환자 진료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경우 응급처치에 관한 의료비의 부담은 주취자 본인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응급의료 기금관리기관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의해 알코올중독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의 경우 통상적인 입원절차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경우 경찰관은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을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취자가 ‘응급환자’ 혹은 ‘위험한 알콜중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건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프랑

스의 경우처럼, 공중위생법과 보건부령 등의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가 아닌 ‘요보호 주취자’의 경우 경찰이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 공공 보건 의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처리 절차에 준하는 주취자 검진 및 필요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랑스 등 외국과 한국의 음주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수의 절대적인 차이와 의료제도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주취자 검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주취 해소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현재 응급구호 대상 주취자가 아닌 경우 보호조치는 경찰관서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찰의 주취자 안정실은 유명무실화 되었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임시로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취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관서가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비용급 주취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주취자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 처벌이 아닌 보호와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취 해소센터’ 설치 및 운영은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설치 및 운영

주취자 보호는 사회복지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경찰, 의료기관이 공조하는 다기관협력 방식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성숙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주취해소센터’(가칭)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협조하여 복지부 소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등 개정하여 ‘주취해소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용 및 인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거점 병원을 두어 각 거점병원에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한다면 의료장비들을 활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안전한 주취자 검진이 가능하고 의료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주취자 난동 제지를 위해 담당 경찰을 상주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워싱턴 D.C, LA) 에서 주취자 문제를 경찰의 문제가 아닌 복지문제로 인식,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산하에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 경찰서 중심의 설치 및 운영

우리나라 ‘경찰 주취자안정실’ 운영이 실패한 이유는 의료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의 판단과 부실한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호조치 중에 보호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그 책임을 보호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주취자를 포괄적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고자 하여도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주취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는 초동조치는 그 성질이 경찰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이 ‘주취해소센터’ 운영의 중심 주체가 되고 보건의료 시스템이 보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각 경찰서에 주취자 보호시설을 두고 공중보건의 등을 근무하게 한다면 의료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의 판단과 부실한 관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주취자 검진 이외에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들에 대한 검진에 활용한다면 경찰의 피의자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경찰관의 주취자 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주취자를 상대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74.2%의 경찰관이 음주소란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근무중인 경찰서에 음주소란자 대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느냐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 사람은 91.2%에 달했다.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부재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주취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음주소란자 등 단순주취자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귀결된다. 그리고 주취자에 대한 대응과정에서의 언어적 폭력 또는 물리적 행사로 민원을 야기하게 된다.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 보호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교육은 특별교육 형태로 일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기존 교육체계 속에 녹아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경찰학교에서의 신입경찰관 교육과정에 주취자의 특성 이해 및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취자 대상 언어 및 화술과 대응 요령 교육 후에 실제 지구대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문제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상황극을 해보는 ‘체험식’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지구대, 파출소, 형사 외근, 교통 외근 경찰관들 대상 직무교육과 각 계급 기본교육과정에서도 주취자 대응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주취자 처리가 경찰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경찰관의 사기저하 및 부상, 스트레스 유발요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찰교육 체계 전반에 주취자 대응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5) 주취자 대응 및 인권보호 매뉴얼의 마련

경찰에서는 초동조치, 지역경찰, 성폭력 사건 대응 등 각 중요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사용하고 있다. 관련 법과 이론, 원칙을 구체적인 절차와 지침으로 만들어 경찰관들이 그대로만 따르면 효과적인 법집행은 물론, 적정절차의 준수 및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주취자 대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과 원칙, 규정과 이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주취자 대응 및 관리와 인권보호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공개한 뒤 운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경찰관 및 경찰관서가 동일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고, 주취자를 비롯한 시민과 사회가 경찰의 주취자 대응 및 관리 원칙과 절차가 무엇인 지를 알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2006년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광병선 외, (2007),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취자 보호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문성도, (2009), “주취자에 대한 경찰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경찰법학회 32차 학술대회 자료집.

박동균 외, (2009),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연구: Broken Window Theory 관점에서”, 한국치안행정논집.

백창현, (2008), “공권력 확립을 위한 주취자 관리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세계일보, 2010년 2월 13일자.

삼육대학교알코올문제연구소, 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문화적수용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 연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

이동희, (2004), “주취소란자 처리에 관한 비교법연구-일본의 명정자규제법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4년 7월호, 수사연구사.

이명원, (2009), “영국 알콜관련 범죄와 무질서 대응전략: 효과분석 및 도입방안 검토”, 경찰청.

이호용, (2009),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토마스 버켄탈/양건·김재원 옮김, (2001),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하혜영 외, (2009),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한정갑, (2008),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 질서개념 및 경찰관련 법규의 검토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내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 외국문헌

Cass. crim. 12 mars 1875 et 24 avril 1990 bull. crim. 1990 n°152.

Decision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ffaire Witold Litwa c. Pologne, 2000.04.04.

Department of Health. (2008), Code of Practice. Mental Health Act 1983.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Docking M, Grace K, Bucke B. (2008), Police Custody as a 'Place of Safety': Examining

the Use of Section 136 of the Mental Health Act.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IPCC) Research and Statistics Series: Paper 11.

HM v Switzerland, LTL 26 February 2002.

Home Office, A Practical Guide for Dealing with Alcohol Related Problems: WHAT YOU NEED TO KNOW (COI on behalf of the Home Office, february 2008)

Rapport d'évaluation de la procédure d'ivresse publique et manifeste, février 2008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08), Standards on Use of Section 136 of the Mental Health Act 1983 (2007) (version for England).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Council Report 149.

小堀旭, (1961), 酒に酔っ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爲の防止等に關する法律の概要, 警察研究 第32卷 第7号.

西原春生, (1961), 酒に酔っ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爲防止法, ジュリスト 第231号, 有斐閣.

- 외국법령

Circulaire du ministère de la Santé du 16 juillet 1973

Circulaire du ministère de la Santé du 9 octobre 1975

Code pénal

Code de la santé publiq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인터넷 자료

<http://www.echr.coe.int/>(2010.09.25)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89554>(2010.09.16 검색)

http://www.londonambulance.nhs.uk/news/alcohol-related_calls.aspx(2010.09.08 검색)

붙임자료1: 경찰관용 설문지



음주소란자와 경찰업무에 관한 인식 조사 [경찰용]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경찰의 음주소란자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소란자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께,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음주소란자를 다루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의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 나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의 작성결과는 본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귀하가 작성한 응답결과는 통계처리 되므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응답자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이 과거 개인적 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회상하게 되는 점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적극적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 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 [인권교육]

1. 귀하는 최근 3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회 ____일) ② 있다
2.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회 ____일) ② 있다
3. 경찰서 내에 음주소란자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회 ____일) ② 있다
4. 경찰서 내에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회 ____일) ② 있다

나. [업무 환경에 관한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업무 수행중 귀하(경찰관)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 주취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소지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생명 혹은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소지 때문에 대처하지 못해 다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 귀하의 경찰서에서 주취자를 대할 때 반말, 욕설 등 언어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5. 주취자를 상대할 때 폭행 등 물리적 위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6. 음주소란자를 상대할 때 폭행 등 물리적 위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7. 음주소란자를 상대할 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8. 음주소란자를 상대할 때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9. 경찰관의 인권이 침해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음주소란자의 폭언 및 욕설/ 폭행
- ② 경찰 보호 장비 및 경찰안전의 미확보
- ③ 열악한 근무환경
- ④ 언론 및 인권단체의 압력
- ⑤ 기타 _____

다. [질서 유지와 경찰 권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은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언어적 위협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신체적 위협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시민은 경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5. 범죄인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진압은 오히려 일반시민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라. [음주소란자 진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것은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음주소란자의 욕설은 나에게 모욕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3. 음주소란자의 물리적 폭행은 나의 신체에 위협이 된다.	①	②	③	④
4. 음주소란자 진압을 위한 무기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음주소란자의 물리적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6. 음주소란자의 행위에 경찰 직업에 회의를 갖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7. 음주소란자의 욕설이 없다면 나는 결코 욕설을 먼저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음주소란자의 물리적 폭행이 없다면 나는 결코 물리적 제제를 먼저 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경찰의 억압적 말투에 음주소란자의 행위는 대부분 누그러진다.	①	②	③	④
10. 경찰의 물리적 행위에 음주소란자의 행위는 대부분 누그러진다.	①	②	③	④
11. 음주소란자 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강경히 다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음주소란자 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모습은 진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①	②	③	④
13. 음주소란자 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언어적 위협은 진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①	②	③	④
14.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법이 있다면 경찰의 폭력적인 언어사용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15. 음주소란자를 다스리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법이 있다면 경찰의 폭력적 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마. [음주소란자에 대한 견해]

다음은 음주소란자에 대한 당신의 의견과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설문은 비밀이 지켜질 것이며, 당신의 답변들은 당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음담패설과 욕설은 평상시보다 더욱 불쾌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 여성 음주소란자는 남성에 비해 더욱 불쾌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3. 음주소란자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민이다.	①	②	③	④
4. 음주소란자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이다.	①	②	③	④
5. 법조항에서 음주로 인한 감경사유는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6. 술을 먹고 한 사소한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경찰 시야에서 발생한 음주소란자 사고는 경찰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9. 음주로 인한 사고는 술에 취한 본인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10.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술에 취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경찰서 안에 만들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술에 취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은 사회복지시설에 만들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3. 음주소란자를 단속하는데 있어 현재 경찰인력은 증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4. 음주소란자를 단속하는데 경찰의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5. 음주소란자를 단속하는데 강력한 법체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6. 음주소란자는 경찰보다는 사회복지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바. [음주소란자 규제 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음주소란자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되면 음주 후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음주소란자에 대해 형사처벌(구류 등)이 강해지면 음주 후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음주소란자에 대한 사회치료프로그램(알코올중독 치료 등)이 병행되면 음주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사. [경찰의 대처 방식에 대한 제안]

음주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음주소란자 및 자해 우려자들의 수용을 위해 경찰서(지구대 등)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 을 설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서(지구대 등) 보호유치실을 설치 하고 CCTV를 설치하여 경찰이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주소란자가 진료를 요구시 신속하게 의사 진료 및 상비약 을 지급하도록 경찰서(지구대 등) 의료인 을 배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음주소란자의 모든 행위를 녹화 할 수 있도록 경찰서 및 지구	①	②	③	④	⑤

대의 CCTV 사각지대를 없앤다.					
5. 음주소란자가 경찰서(지구대 등)에 들어오면 무조건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범칙금(스티커 발부 등)을 부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음주소란자가 경찰서(지구대 등)에 들어오면 사회복지시설로 인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음주소란자에 대한 적절한 경찰의 대처 방식을 위한 조언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처리를 위한 인구학적 사항]

다음은 당신의 인구학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숫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_____ 년생 (예: 1978년생)

3. 귀하의 경찰서는 몇 급서입니까?

- ① 1급서 ② 2급서 ③ 3급서

4. 귀하의 근무지는 다음 중 어느 지방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울산
 ⑥ 광주 ⑦ 경기 ⑧ 강원 ⑨ 충북 ⑩ 충남
 ⑪ 전북 ⑫ 전남 ⑬ 경북 ⑭ 경남 ⑮ 제주

5. 귀하가 현재 소속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 ① 지구대 ② 경무 ③ 생활안전 ④ 수사 혹은 형사 ⑤ 경비
⑥ 교통 ⑦ 외사 ⑧ 정보 ⑨ 보안 ⑩ 기타
-

6. 귀하의 현재 계급은 무엇입니까?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7.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해당분야 재학, 중퇴, 검정고시 포함)

-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 ③ 4년제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8. 귀하의 배명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도

9. 지금까지 인권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진정(국가인권위, 청문감사관, 국민권익위 등)이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있다면 _____ 건) ② 아니오

★설문지의 질문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붙임자료2: 일반인용 설문지



음주와 경찰의 태도에 관한 조사 [시민]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일반시민이 음주상태에서 경험한 경찰의 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의 음주경험과 음주상태에서 경험한 경찰의 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묻게 됩니다.

설문지의 작성결과는 본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귀하가 작성한 응답결과는 통계처리 되므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응답자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이 과거 개인적 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회상하게 되는 점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 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후 경찰 대면 경험]

A1. 당신은 지난 5년간(2005년 1월 1일 이후) 음주 후 또는 음주상태에서 경찰을 상대하거나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지난 5년간 있다.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일은 ③번에 표시하시오)
- ② 지난 5년간 없다.
- ③ 5년 동안은 아니지만, 그전에 경험하였다.

[경찰에 대한 인식]

경찰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B1.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가진 권한은 증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B2.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언어적 위협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B3.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폭력적 위협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B4. 경찰은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B5. 범죄인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진압은 오히려 일반시민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음주 및 음주소란자에 대한 견해]

다음은 음주 행위와 음주소란자에 대한 당신의 의견과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설문은 비밀이 지켜질 것이며, 당신의 답변들은 당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C1.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음담패설과 욕설은 평상시보다 더욱 불쾌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C2. 여성 음주소란자는 남성에 비해 더욱 불쾌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C3. 음주소란자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민이다.	①	②	③	④
C4. 음주소란자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이다.	①	②	③	④
C5. 법조항에서 음주로 인한 감경사유는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C6. 술을 먹고 한 사소한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C7.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C8. 경찰 시야에서 발생한 음주소란자 사고는 경찰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C9. 음주로 인한 사고는 술에 취한 본인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C10.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인권, 응급처치 등)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C11. 술에 취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경찰서 안에 만들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C12. 술에 취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은 사회복지시설에 만들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C13. 음주소란자를 다스리기 위한 강력한 법적인 제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음주와 경찰에 대한 경험]

다음은 당신이 **음주상태로 경찰을 상대로 경험한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5년간(2005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행동들이 얼마나 자주 당신에게 발생했는지 당신의 경험을 회상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행위에 대한 질문

과거 5년간 (2005년 1월 1일 이후) 당신은 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하였다
---	---	-----	-------------------------

D1. 당신을 다치게 할 만한 물건을 던졌다.	①	②	③
D2. 당신의 팔다리를 비틀었다.	①	②	③
D3. 당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①	②	③
D4. 당신을 손으로 때리거나 쳤다.	①	②	③
D5. 당신을 발로 찼다.	①	②	③
D6. 당신의 목을 졸랐다.	①	②	③
D7. 당신을 한 명의 경찰이 기습적으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때렸다.	①	②	③
D8. 당신을 두 명 이상의 경찰이 기습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때렸다.	①	②	③
D9. 당신을 특정 물건으로 눈을 가린 후 때리거나 육체적 상해를 입혔다.	①	②	③
D10. 당신을 들어 던졌다.	①	②	③
D11.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때렸다.	①	②	③
D12. 당신의 물건을 망가뜨렸다.	①	②	③

언어 사용에 관한 질문

과거 5년간 (2005년 1월 1일 이후) 당신은 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하였다
E1. 경찰이 당신에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고 위협했다.	①	②	③
E2. 당신에게 반말로 욕을 하였다.	①	②	③
E3. 구속, 감옥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협박하였다(정당한 형사 제제에 대한 경고제외).	①	②	③
E4. 지문을 찍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협박하였다(정당한 형사 제제에 대한 경고제외).	①	②	③
E5. 당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외모나 다른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①	②	③
E6. 당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가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①	②	③
E7. 장애인에 대한 혐오적 말투나 인종차별적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E8. 교포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 말투나 인종차별적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E9. 여성이나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적 말투나 성차별적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	---	---	---

직권 남용에 관한 질문

과거 5년간 (2005년 1월 1일 이후) 당신은 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하였다
F1. 경찰이 나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핸드폰에 있는 사생활을 들춰냈다.	①	②	③
F2. 당신의 상황과 상관없는 죄목을 적용하였다.	①	②	③
F3.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하였다.	①	②	③
F4.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수갑을 채웠다.	①	②	③
F5.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포승줄로 묶었다.	①	②	③
F6. 수갑을 땅바닥과 가까운 곳에 채워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F7. 수갑을 세게 채워 손목에 상처를 입혔다.	①	②	③
F8. 병원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묵살하였다.	①	②	③
F9.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부탁을 묵살하였다.	①	②	③
F10. 당신을 경찰서 이외의 다른 상관없는 곳에 내려놓았다.	①	②	③

성적인 언어와 행동에 관한 질문

과거 5년간 (2005년 1월 1일 이후) 당신은 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하였다
G1.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여 나를 호칭했다.	①	②	③
G2.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을 하였다.	①	②	③
G3.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①	②	③
G4. 성적으로 불쾌한 방식으로 나를 만졌다.	①	②	③

수치심 관련 경험 질문

과거 5년간 (2005년 1월 1일 이후) 당신은 음주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하였다
H1. 화장실 사용을 불허하였다.	①	②	③
H2. 당신의 생리적 현상(화장실 사용 혹은 물 요구 등)을 조롱하였다.	①	②	③
H3. 당신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 기습적으로 문을 열거나 방해하였다.	①	②	③
H4. 당신에게 침을 뱉었다.	①	②	③
H5. 당신을 경찰서 바닥에 기게 하거나 끌고 다녔다.	①	②	③

화장실 시설에 관한 질문

과거 5년간 (2005년 1월 1일 이후) 당신은 음주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이러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과거 5년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경험하였다
H6. 성별이 구별되지 않은 화장실 공용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었다.	①	②	③
H7.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①	②	③

[음주소란자 규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I1. 음주소란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면 음주 후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I2. 음주소란자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강해지면 음주 후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I3. 음주소란자에 대한 사회치료프로그램(알코올중독 치료 등)이 병행되면 음주 소란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I4. 음주소란자에 대한 적절한 경찰의 대처 방식을 위한 조언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요소들]

다음은 당신의 과거 행동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연구는 비밀이 유지되며 당신의 답변들은 당신과 연결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J1. 지난 1년 동안 (2009년 7월 1일 이후) 당신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①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 없다.
- ② 거의 안마셨다 (1년에 5번 이하).
- ③ 가끔 마셨다 (1 달에 1번 꼴).
- ④ 비교적 자주 마셨다 (2주일에 1~2번).
- ⑤ 매우 자주 (1주일에 3번 이상).

J2. 지난 1년 동안 (2009년 7월 1일 이후) 당신은 얼마나 자주 만취상태(움직이기 위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까지 술을 마셨습니까?

- ① 지난 1년 동안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 ② 술은 마셨지만 가볍게 마셔서 만취된 적이 없다.
- ③ 없는편이다 (1년에 5번 이하)
- ④ 자주 있다 (2주일에 1~2번).
- ⑤ 매우 자주 있다 (1주일에 3번 이상).

J3. 지난 1년 동안 (2009년 7월 1일 이후) 당신은 음주운전을 해본 적 있습니까?

- ① 예 (있다면 _____회) ② 아니오

J4. 지난 1년 동안 (2009년 7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입건된 적 있습니까?

- ① 예 (있다면 _____회) → **4.1로 가시오.**
② 아니오

4.1.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이 “미란다 원칙” (변호인 선임, 묵비권 등)을 공지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J5. 지난 1년 동안 (2009년 7월 1일 이후) 음주 후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있다면 _____회) ② 아니오

-질문이 다음장에서 계속됩니다-

J6. 지난 1년 동안 (2009년 7월 1일 이후) 음주 후 싸움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있다면 _____회) → **6.1로 가시오.**
② 아니오

6.1. 싸움으로 경찰서에 갔을 때, 찰이 “미란다 원칙” (변호인 선임, 묵비권 등)을 공지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통계처리를 위한 인구학적 사항]

다음은 당신의 인구학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K1. 당신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K2. 당신의 연령은? _____ 년생 (예: 1978년생)

K3. 당신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혼자 산다.
 ② 가족과 함께 산다.
 ③ 보호센터에서 거주한다.
 ④ 기타: _____

K4. 당신의 최종 학력은?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교 졸/이상

K5. 당신의 고용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계약직)
 ③ 일용직 ④ 무직

★ 설문지의 질문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

★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붙임자료3: 일본의 명정자규제법(번역문)

술에 취하고 공중에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昭和 36년 6월 1일 법률 제103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술에 취해 있는 자 (알코올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만취자」라고 한다)의 행위를 규제하고, 또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만취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과도한 음주가 개인적 및 사회적에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고, 이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절도 있는 음주)

제2조 모든 국민은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악습을 배제하고 음주에 관하여 절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호)

제3조 경찰관은 만취자가 도로, 공원, 역, 흥행장, 음식점 그 밖의 공공의 장소 또는 기차, 전철, 승합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 밖의 공공의 교통수단 (이하 「공공의 장소 또는 교통수단」이라고 한다)에서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만취자의 언동, 그 취기의 정도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본인을 위해,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우선 구호 시설, 경찰서 등 보호하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경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만취자의 친족, 지인 그 밖의 관계자 (이하 「친족등」이라고 한다)에 이를 통지하고, 그 자의 인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는 책임 있는 친족 등의 인수가 없는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취기를 식히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 이유, 보호 및 인도의 시일 및 인도장소를 매주 해당 보호를 한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 소재지를 관할 간이재판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벌칙 등)

제4조 만취자가 공공의 장소 또는 교통수단에서 공중에게 폐를 끼칠 정도로 현저히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한 때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 및 과료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1항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게 준한다.

제5조 경찰관은 전조 제1항의 죄를 실제로 범하고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의 언동을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던 자가 그 제지에 따르지 않고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중에 현저한 폐를 끼쳤을 때는 1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

제6조 경찰관은 만취자가 그 자의 주거내에서 동거친족 등에게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당해 친족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 제반의 상황으로부터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찰관직무집행법(昭和 23년 법률 제136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거내로 들어갈 수 있다.

(통보)

제7조 경찰관은 제3조 제1항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만취자를 보호한 경우에 당해 만취자가 만성 알코올 중독자(정신장애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이라고 인정할 때는 신속하게 인근의 보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진찰 등)

제8조 전조의 통보를 받았던 보건소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통보에 관계된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건소장은 당해 통보에 관계된 자의 치료 또는 보건 지도에 적당한 다른 의료시설을 소개할 수 있다.

제9조 전조 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진행된 자가 그 권유에 따르고 받는 진찰 및 진찰의 결과 필요하다고 진단된 치료에 관해서는 당해 진료를 받는 자가 곤궁으로 인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생활보호법(昭和 25년 법률 제144호) 제15조에 규정한 의료부조를 받을 수 있다.

(적용상의 주의)

제10조 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 인쇄일 : 2010년 12월
- 발행일 : 2010년 12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을지로 1가 16)
우 100 - 842
전화 / (02) 2125 - 9621, 9624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한길기획인쇄 (02) 2274 - 8916
- 한국문헌번호 (ISBN) : 978-89-6114-223-693330

비매품